

인권정보자료실
CPj1.43

사법행정간행물등록번호
100200-3201-67-200315

각국의 신분등록제도 및 우리나라 전산호적의 발전방향



각국의 신분등록제도 및 우리나라 전산호적의 발전방향

인권정보자료실
CPj1.43
처



법원행정처

각국의 신분등록제도 및 우리나라 전산호적의 발전방향



법원행정처

머 리 말

호적제도는 국민 개인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호적부에 등록하여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나라의 호적은 호주를 기준으로 하여 가족을 함께 등록하는 가족별 편제방안을 택하고 있어 호주와 가족의 관계 및 그들의 신분변동 관계를 모두 기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호적제도는 이와 같이 개인과 아울러 가족의 신분관계를 일목요연하게 공시하는 기능을 다하여 왔지만, 호주제도가 헌법상 보장된 양성평등에 어긋나므로 이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고, 또한 현행 호적제도로는 다양한 가족형태를 수용하기 어려우므로 개인본위의 제도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호주제 폐지에 관한 찬반논의와 함께 현행 호적제도를 대신할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호적사무를 총괄하는 중앙관장기관 및 중앙감독기관으로서 이미 2002. 11. 호적전산화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호주제가 폐지될 경우 발생할 혼란을 최소화하고 21세기가 요구하는 새로운 신분등록 모델에 관하여 관리자의 입장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지속적인 연구를 하여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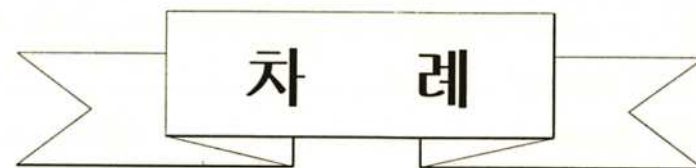
이 책자는 이러한 연구성과를 자료화한 것으로, 각국의 신분등록제도, 우리의 호적제도 및 앞으로 전산호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리한 것입니다. 역사적 배경을 달리하는 각 나라는 자신의 특수한 신분등록제도가 존재하고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비교법적인 연구는 우리의 신분등록 모델을 만들어감에 있어서 좋은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전산화된 호적의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어떻게 개선하는가에 따라, 호주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와 여러 신분등록 편제방안에 관한 논의 대립을 상당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므로, 미래지향적인 전산호적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 책자가 새로운 신분등록 방안연구와 우리 전산호적의 발전을 위하여 유용한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책자의 발간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법원행정처 법정국 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3. 5.

법원행정처장 이 강 국



제1장 각국의 신분등록제도	1
I. 일본	1
1. 역사	1
가. 민법과 호적법	1
나. 명치시대 호적	1
다. 제2차대전 후 호적	2
2. 호적의 편제방법	3
가. 일본국민 기록원리	3
나. 신고주의	4
다. 이기(移記) 등록원리	4
라. 인적편제카드방식	5
마. 가족카드방식	5
바. 부부단위원리	6
사. 동성동적원리	6
아. 3대호적금지 원리	7
3. 기록사항	8
가. 본적란	9
나. 씨명(氏名)란	9
다. 호적사항란	10

라. 성명란	11
마. 부(父)란과 모(母)란	11
바. 부모와의 관계란	12
사. 출생란	13
아. 신분사항란	13
4. 호적신고	21
가. 출생신고	22
나. 인지신고	23
다. 입양신고	24
라. 파양신고	25
마. 혼인신고	26
바. 이혼신고	29
사. 친권·후견신고	30
아. 사망·실종신고	31
자. 생존배우자의 복성(復姓)·혼족관계 종료	31
차. 추정상속인의 폐제(廢除)	32
카. 입적	32
타. 분가	32
파. 국적의 득실	32
하. 성명의 변경	32
거. 전적·취적신고	33
5. 호적의 기능	33
가. 구체적 친족관계 증명 - 상속법에 미치는 영향	33
나. 신분관계의 현상(現狀) 증명 - 친족법에 미치는 영향	34
6. 호적공개의 원칙	36
가. 1976년 이전의 상황	36
나. 1976년 이후의 상황·현행법	37

II. 중국	41
1. 역사 및 관계법령	41
가. 역사	41
나. 호구등기조례	41
다. 관장기관	44
2. 호구부	44
가. 편제	44
나. 기록내용	45
다. 출생	46
라. 혼인과 이혼	47
마. 사망	49
3. 특징	49
III. 대만	52
1. 역사	52
2. 편제방식	52
가. 개정전 호적편제방식	52
나. 개정후 호적편제방식	53
다. 특색	53
3. 호적업무 담당부서 조직, 업무내용 및 전산화	54
가. 조직 및 업무내용	54
나. 호적사무 전산화	55
IV. 미국	56

1. 특징	56
가. 사건별 편제방식	56
나. 신분등록부 사이에 연결 기재 없음	56
2. 신분등록부	57
가. 출생증명서(Certificate of birth)	57
나. 결혼허가증(Marriage license)	58
다. 이혼사건표(Divorce Docket)	61
라. 사망증명서(Certificate of death)	62
3. 미국에서의 신분등록제도와 프라이버시 보호	63
가. 인구동태통계와 신분등록과의 관계	63
나. 등록제도의 이용과 프라이버시 보호	64
다. 신분등록제도의 사회적 기능	64
V. 영국	66
1. 특징	66
2. 신분등록부	66
가. 출생등록부	66
나. 혼인등록부	67
다. 사망등록부	67
라. 신분등록부의 공개	68
마. 외국인의 신분등록	68
VI. 프랑스	70
1. 역사	70
가. 교회에 의한 신분의 기록	70

나. 국가에 의한 신분의 기록	71
2. 편제방식	72
3. 신분등록부	75
가. 출생증서(acte de naissance)	75
나. 혼인증서(acte de mariage)	85
다. 사망증서(acte de décès)	87
라. 가족대장(Livret de famille)	88
VII. 독일	91
1. 역사, 관계법률	91
가. 역사	91
나. 신분법	92
2. 신분등록부	92
가. 출생부(Geburtenbuch)	93
나. 혼인부(Heiratsbuch)	96
다. 사망부(Sterbebuch)	98
라. 가족부(Familienbuch)	99
3. 특징	105
가. 가족부의 이동성	105
나. 신분등록부 사이의 연결	105
다. 신분등록부의 비공개	106
라. 연방데이터보호법과 관계	108
VIII. 스위스	112
1. 신분등록부	112

가. 종류	112
나. 관계법령	112
다. 전산화	112
2. 개별등록부	112
가. 출생등록부	113
나. 혼인등록부	114
3. 가족등록부	116
가. 기재사항	116
나. 독일, 오스트리아와 비교	117
4. 가족수첩	117
가. 제도의 근거	117
나. 교부시기	118
다. 기재내용	118
라. 증거력	118
5. 등록부 사이의 연결기능	118
가. 다른 등록부와 연결	119
나. 연결의 존재 여부와 방법	119
다. 과거 가족의 추적	119
6. 신분등록부의 비공개	119
가. 비공개 원칙	119
나. 연방개인정보법률과 관계	121
IX. 오스트리아	130
1. 신분등록부	130
2. 개별등록부	130
가. 출생등록부	130

나. 혼인등록부	131
다. 등록부의 비공개 원칙	131
3. 가족등록부, 가족수첩	132
X. 네덜란드	135
1. 네덜란드의 신분등록방법	135
가. 신분등록과 인구등록	135
나. 역사	135
다. 관장기관 및 보관	135
2. 네덜란드 신분등록부의 내용	136
가. 출생등록부	136
나. 혼인등록부	140
다. 사망등록부	143
라. 동반자등록부	144
XI. 북한	146
1. 신분등록제도	146
가. 북한에서의 신분등록제도의 의미	146
나. 정권 초기의 신분등록제도	146
2. 현행 신분등록제도	147
가. 신분등록사업	147
나. 공민등록사업	150

제2장 우리 나라의 호적제도 및 전산 호적 발전방향153

I. 호적제도 현황153

1. 호적사무 153
 가. 호적의 의의 153
 나. 호적사무의 성격 153
 다. 호적사무의 연혁 154
 라. 호적사무 관장·감독 155
 2. 호적부·호적기재사항 156
 가. 개요 156
 나. 호적부·제적부 157
 다. 호적기재사항 158
 라. 호적부의 공개 158
 3. 호적제도의 특징 159
 가. 인적 편제방식 159
 나. 가족별 등록방식 161
 다. 이기(移記) 등록방식 162
 라. 호적 사이의 연결기재 163
 마. 신고주의 164
 바. 대한민국 국적의 공시 기능 168

II. 현행 호적제도에 대한 평가168

1. 신분 공시에 관한 우수한 신분등록제도 168
 2. 호주·호적제도에 대한 비판적 견해 169

3. 호주제가 폐지될 경우의 신분등록 대안 논의 170
 가. 기본가족별 편제방안 171
 나. 주민등록과 일원화한 편제방안 171
 다. 개인별(1인 1적) 편제방안 172
 4. 향후 전망 173

III. 전산 호적의 발전 방향174

1. 서론 : 전산 호적의 기능 174
 2. 신분등록자료 색인 기능 : 개인별 주민등록번호 보완 174
 3. 가족관계의 확인 기능 : 부모 주민등록번호 보완 176
 4. 전산 호적 데이터베이스 구조개선의 효과 178
 가. 신분정보 제공서비스의 다양화 178
 나. 호적제도의 단점 보완 및 호주제 폐지에 대비한 사전 준비 179
 다. 불실호적의 정리 180
 5. 장기간의 예산 지원 및 국민의 참여 181
 6. 신분관계의 정확한 공시 및 사생활 보호 181
 7. 호적·신분등록의 관리 184

*** 참고문헌 188**

〈그림〉
 일본호적양식 8
 독일 가족부 110
 스위스 출생등록부 122
 스위스 혼인등록부 123
 스위스 혼인공고, 신분등록소가 발행하는 증명서 125

스위스 가족수첩	126
스위스 가족등록부	128
스위스 혼인등록부초본	129
오스트리아 출생등록부	133
오스트리아 혼인등록부	134
네덜란드 출생등록부	136
네덜란드 혼인등록부	141
〈별지 1〉 우리 나라 전산호적등본양식	186
〈별지 2〉 개인별 신분등록부(예)	187

제1장 각국의 신분등록제도

1. 일본

1. 역사

가. 민법과 호적법

일본에서 호적과 관련한 법률은 호적법이다. 이 호적법에 따른 현재 일본 호적은 1947년 민법개정으로 '가(家)'제도 폐지에 따른 가족법 개혁으로 현실화한 것이며, 명치시대 이래 호적과 비교하여 보면 크게 변했다고 할 수 있다.

일본호적제도는 임신호적을 편제한 1872년 이후 이미 130년을 넘는 역사를 가진다. 그 동안, '가'제도를 골격으로 한 명치민법에 따른 명치호적법에 의하여 1898년 호적(명치호적)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현행민법에 따른 현행호적법에 의하여 1948년 호적(현행호적)을 편제하였다. 이와 같이 호적제도는 민법 제·개정에 따라서 크게 개편되면서 신분기록제도로 발전해 왔다.

나. 명치시대 호적

일본에서 최초로 '호적'이라 부른 것은 명치시대 초기 임신호적이다. 이는 봉건제가 붕괴하고, 새로운 정치지배조직으로 출현한 명치시대 절대주의정부가 경제적 기초를 확립하고 그 체제를 정비한 시기에 출현하였다. 호적제도는 바로 이러한 기본적인 정치체제 구조변화를 법률적인 지배절차 면에서 현실화시킨 것으로, 그 경제적 지배를 법적 측면에서 보장하면서 인민의 보호 즉, 경찰적 지배·행정적 관찰을 위한 기술적 수단으로 기능했다. 명치유신 후 일본이 근대화를 진행하려고 하는 때, 맨 처음으로 착수한 법령이 호

적법이었다. 징세·징병·치안을 목적으로 인구동태를 상세하게 파악하는 것이 그 정치의 출발점이었다. 그러므로 호적은 당시 현실생활단위인 가족·가·호 단위로 편제했다. 따라서, 호주를 중심으로 존속과 비속, 직계와 방계, 남녀 순으로 가족전원을 종합하여 기록하는 가족 단위기록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기록부는 아니었다. 호적은 '일가라면 반드시 호주가 있으며, 호주는 일가를 책임지고, 노인과 아이를 부양하고, 윤리를 지키며, 사회보장이 불충분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호주가 보살핀다'고 하는 가족의 존재방법을 나타낸 것이었다. 이러한 호적의 가족방식에 법적 근거를 주기 위하여 민법에 가제도를 두었다. 정부는 가제도에서 치안정책과 사회보장정책의 대체기능을 구하고, 나아가 천황을 주권자로 하는 가족국가관의 기초를 세우는 역할도 기대했다. 호적은 '가'를 눈으로 볼 수 있는 형태로 만든 중요한 제도였다. 이 제도를 기술적으로 정비하여, 각 개인의 출생부터 사망에 이르는 모든 신분관계사항을 순차로 기록했기 때문에 호적을 보면, 가족과 그 신분관계변동을 모두 정확하게 일람할 수 있다.

따라서, 명치민법 아래에서 호적제도는 관념적인 '가'와 그 구성원(호주와 가족)의 신분관계를 일괄 기록 공증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호주와 본적과 1호마다 편제'하도록 하였다(구 호적법 9조). 호적은 '가'제도를 유지하고, 이를 기록·공시·공증이라는 절차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다. 제2차대전 후 호적

제2차대전 후 민법개정으로 가제도를 폐지하고, 이것을 기회로 호적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호적이 가제도를 표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고 각 개인마다 호적을 만들려고 했지만, 일본정부는 "경제력을 회복하면 1인호적으로 하고 싶지만, 현재로서는 어렵다"라고 답변하고 있었다. 그 결과, 호적에 기록하는 가족범위를 부부 및 그들과 성(姓)을 같이하는 자녀로 축소하여(3세대 호적금지), 성을 기준으로 정했다. 예컨대, 남편의 성을 부부의 성으로 했을 때는 남편을 호적필두자(戶籍筆頭者)로 하는 호적을 편제하고, 남편

도 아내도 부모 호적에서 제적하여 상호적에 입적하고, 필두자인 남편과 성이 같은 자녀를 순번으로 기록한다. 이 부부가 이혼했을 때는 아내는 제적하여 원 호적으로 복귀하든가, 새로 호적을 편제한다. 자녀가 혼인하였을 때는 부모호적에서 제적하고, 상호적을 편제한다. 이와 같이 호적필두자를 기준으로 그와 동성인 자를 호적에 기록하거나, 입적·제적을 반복하는 구조를 채용한 것이다.

2. 호적의 편제방법

일본의 호적은 우리 나라와 같은 편제방법을 택하고 있다. 즉, 이기(移記)기록이고, 인적기록이며, 가족단위기록이다.

일본 호적법은 '가'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가(家)나 호주를 중심으로 하는 편제를 피하고, 시읍촌의 구역 내에 본적을 정한 한 부부와 성(씨)이 동일한 자녀로, 즉 부부중심가족단위로 편제하도록 했다(호적법 제6조). 그리고, 그들의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신분상 중요한 변동사실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동적으로 기록하도록 했다. 나아가, 호적에 부표라는 것이 있어서, 이 부표에는 주민등록주소와 주소를 정한 연월일을 기록하고, 주소를 변경했을 때 주소지에서 본적지로 통지하여 부표에 추가로 기록하므로, 개인의 일생 동안 거주관계변천도 추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호적을 가족단위로 편제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부부, 자녀, 형제자매들에 대한 이러한 정보를 일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의 경우 호적의 편제원리는 다음과 같다.

가. 일본국민기록원리

호적은 일본국민의 신분기록이다. 그 신분에는 사적인 친족관계 등 신분 이외에 국제사회에서 일본국민이라는 공적 신분도 포함한다. 천황과 황족은 황통보(皇統譜)에 등록되기 때문에, 모든 일본인이 호적에 등록되는 것은 아니

지만, 호적이 있다면 일단 일본국적에 대한 증거가 된다. 호적은 일본인에 대해서만 작성되고 외국인에 대해서는 작성되지 않기 때문에, 호적기록자라는 것은 일본국민인 것을 증명한다. 이 때문에, 일본인이 국제결혼하더라도, 외국인 배우자는 귀화에 의하여 일본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한, 호적을 작성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일본인에게는 그 사람을 호적필두자로 하는 상호적을 만들어(호적법 16조 3항), 그 외국인 배우자의 성명과 결혼한 사실을 그 신분사항란에 기록한다.

일본인과 외국인의 취급차이로 인한 문제점은 국제적 신분관계의 경우에 현저하게 나타난다. 성씨의 문제는 실제법상의 문제이며, 신분변동과 함께 성씨가 변경되는 경우에 신분등록이 이를 반영해야 된다는 것이 국제사법의 통설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호적실무에서는 일본인의 성씨는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인하여 변동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으며, 1984년의 개정 호적법도 외국인 성씨로의 변경절차를 호칭 상의 성씨변경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호적실무에 대해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나. 신고주의

호적기재는 원칙적으로 국민의 신고(보고, 신청, 청구, 증서·항해일지 등본, 재판 포함)에 의해 이루어진다(호적법 제15조). 따라서 국민의 이해와 협력이 전제가 된다.

다. 이기(移記)등록원리

이기등록이란 편철등록에 대응하는 것이다. 편철(파일)등록이란 국민으로부터의 신고서 그 자체를 편철(파일)할 뿐인 등록제도를 말한다. 미국의 출생등록, 혼인등록 등은 이에 속한다. 이에 대해서 이기등록이란 국민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관청측에서 그 신고내용을 등록카드에 기입(移記)하여 이를 공시하는 등록제도이다. 호적은 이기등록에 속하지만, 여기에는 이기작업 이외에

이기를 함에 있어서 신고서 내용에 대한 심사를 동반하게 되므로, 사무직원의 능력과 근면함이 요구된다. 그만큼 그 효용성은 절대적이다.

라. 인적편제카드방식

인적편제란 각자에 대해서 출생과 동시에 각자의 등록카드를 설정하여, 그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발생된 중요한 신분사항을 일괄하여 계속적으로 기재하는 등록이다. 여기에서는 각자의 신분변동에 따라서 이를 순차적으로 카드에 반영시키는 구조이기 때문에 항상 각자의 신분관계에 대한 현상을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시스템 하에서는 혼인기재가 있고, 그 후에 이혼기재가 없다면 그 혼인관계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이를 동적등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사건별편제카드방식은 어떤 사항별로 그에 대한 등록을 하는데 그친다. 편철등록은 이에 속한다. 예를 들면 미국의 출생등록은 거기에서 출생한 사람의 등록이며, 혼인등록은 거기에서 어떤 자가 혼인하였다는 사실만을 등록한다. 둘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성도 없다. 거기에서는 과거의 어떤 시점(신고시점)에서 어떤 신분사실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나타내는데 그치므로, 정적등록이다. 그래서 동일인에 관한 신고서라도 이것이 일괄적으로 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신분관계에 대한 현상을 파악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 혼인등록과 이혼재판이 별개로 이루어지는 편철등록에서는 혼인등록이 존재한다고 하여, 그 혼인관계가 현시점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혼인등록 후 현재까지 그 사이에 과연 이혼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마. 가족카드방식

가족카드방식이란 개인카드방식에 대응되는 것이다. 개인카드방식은 각자 개인별로 하나의 등록카드를 만들어, 여기에 그 자의 신분사항을 순차적으로 계속하여 일괄하여 기재해 나가는 방식이며, 가족카드방식은 하나의 등록카

드에 가족을 일단으로 하여 등재한 다음, 각자의 신분사항을 일괄하여 기재해 나가는 방식이다. 네덜란드의 신분등록은 개인카드방식인데 비하여, 일본호적은 가족카드방식이다. 이 [가족카드]방식은 단체등록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며, 호적의 특색을 이루므로, 다음 항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다.

바. 부부단위원리

일본호적은 가족편제방식이지만, 이 때 그 가족범위는 부부와 그들과 같은 성을 칭하는 자녀를 한 집단으로 기록한다(호적법 제6조). 따라서, 혼인한 부부는 상호호적을 편제한다. 이 점에서, 부부단위 가족기록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갑과 을 부부 사이에 A1, A2, A3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호적기재가 이루어진다(는 여성을 나타낸다).

(제1호적)

본적 (호적사항란)	동경도 0번지	성명(필두자)	甲
. 혼인신고에 의해 0년0월0일 편제印			
. (신분사항란)			
.0년0월0일 00市에서 출생印	夫	甲	
.0년0월0일乙'과 혼인신고,(동경도 0번지X호적)에서 입적印			
.0년0월0일00市에서 출생印	妻	乙'	
.0년0월0일甲과 혼인신고,(大阪市 0번지Y호적)에서 입적印			
.0년0월0일 00市에서 출생印	A1		長男
.0년0월0일 00市에서 출생印	A2'		長女
.0년0월0일 00市에서 출생印	A3		二男

사. 동성동적원리

호적은 성이 같은 가족을 한 집단으로 하여 호적을 편제하도록 하여, 호적편제 대원칙을 성(일본에서는 성을 씨라 한다)의 동일성에서 찾고 있다. 동성

을 강제하기 때문에, 혼인할 때 성을 하나로 정해야 하고, 성을 정한 부부에게 한 호적을 편제하며, 이 부부와 동일한 성을 가진 자녀를 동일한 호적에 기록한다.

따라서, 남편 성을 쓰는 부부가 이혼하고, 아내가 과거의 성을 회복한 후에 자녀(남편성)를 계속 보살피고 양육하고 있을 때 등은 가정법원의 허가(민법 791조)에 따라 자녀의 성을 남편쪽에서 아내쪽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성이 다르다는 이유에 따라 함께 살고 있는 어머니와 자녀는 별개 호적에 기록하는 것이다.

하나의 호적용지에 따라 그 사람의 부부·친자관계가 일목요연하게 되므로, 일본호적은 편리한 제도이지만, 이것은 성이 같은 가족에게만 해당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일본 국내법의 성씨에 대한 규율 그 자체를 보다 더 인격권적인 관점에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즉, 성씨에 대한 규율을 호적법에서 분리시키고 또한 민법의 성씨에 관한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부부동성 강제제도는 혼인에 의해, 의사에 반하여 자기의 성씨를 빼앗기고, 또한 자기의 성씨를 유지하려고 하면 혼인의 자유가 빼앗기는 심각한 인권침해를 초래하고 있으며, 시급히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개정에 있어서는 자녀의 성씨 결정이나 호적기재 방법에 대한 기술적인 곤란함이 이와 같은 인권침해를 정당화시킬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

아. 3대호적금지원리

제2차대전 전 호적법은 '가'관념을 바탕으로 구성했으므로, 한 호적에는 호주를 시작으로 '가'에 소속하는 자 전원을 기록하고 있었다.

전후 호적법은 이것을 고쳐, 동성동적에서 설명한 대로 부부와 성을 같이하는 자녀만을 동일한 호적에 기록하게 되었다. 따라서, 어느 부부 A, B의 자녀 C가 결혼하면 C는 상호호적을 편제하고, 이 결과 부모 A, B와 손자(C의 자

녀)를 동일한 호적에 기록하지 않는다. 또한, 부부 A, B의 자녀인 C가 양자 D를 얻거나, 사실혼이나 법률혼으로 그 자녀 E를 출산했을 때는 C, D 또는 C, E는 상호적을 편제하며(호적법 제17조), 이 때도 부모 A, B와 손자 D, E를 동일호적에 기록하지 않는다. 즉, 어느 경우에도 부모 자녀 손자, 3대를 동일한 호적에 기록하지 않는다.

(그림) 일본의 호적양식

⑨		⑨		⑨		③		본적
								①
출생	④	모	부	출생	妻	모	부	씨명
⑧		⑥	⑤	⑧	④	⑥	⑤	②
		⑦			⑦			

3. 기록사항

위에서 서술한 편제방법과 원리에 따른 호적양식과 그 기록사항은 다음과 같다. 호적의 기록사항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으로 나눌 수 있다. 공통사항이란, 등재된 자 전원에 공통한 사항으로 호적의 첫 부분에 기록한다. 구체적으로는, 본적란, 씨명란, 호적사항란을 말한다. 개별사항란은 등재된 자 각

사람에게 각각 개별적인 신분사항을 기록하는 것이다. 크게 성명란과 신분사항란으로 구성된다.

가. 본적란

그림의 ①로 표시한 부분이 본적란이며, 여기에는 호적 소재지인 본적을 기록한다. 본적은 호적에 등재된 자 전원에게 공통한 사항이기 때문에, 호적 첫머리에 기록한다. 본적은 행정구역 명칭과 토지의 지번으로 표기해야 하고, 단순한 토지의 통칭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 행정구역 명칭, 토지의 지번은 토지등기부의 표제부에 기재된 것을 사용한다. 지번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에 본적을 정한 경우에는 '무번지'로 기재하든지 또는 그 토지가 관유지라면 지번 대신에 '관유 무번지'로 기재한다. 또한, 시읍면에서 편의상 관유지에 번호를 설정한 경우에는 '관유 5번지'처럼 기재하여도 괜찮다.

주거표시 실시구역(주거표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에서는 지번 이외에 소위 街區符號의 번호를 사용하여도 된다(호적법시행규칙 제3조). 한편, 지번으로 표시되어 있는 본적에 대하여 街區符號의 번호로 표시를 변경할 경우에는 모두 전적신고(소위 관내 전적신고, 호적법 제108조)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나. 씨명(氏名)란

그림에서 ②로 표시한 부분이며, 부부가 남편 성을 칭한 때는 남편성명을, 아내 성을 한 때는 아내성명을 기록한다. 씨명은 본적과 함께 호적을 검색하기 위한 색인으로서 이용한다. 그리고 씨명란에 기록한 자를 '호적필두자'라 한다. 한번 호적을 편제하면 필두자 개인에게 신분행위, 사망에 따른 제적, 신분변동에 따른 성 변경 등이 생겨도 필두자란 성명은 변경되지 않는다. 즉, 그 호적에 등재한 최후의 1인을 제적하기까지 필두자로서 지속한다(호적법 제9조). 필두자가 제적되어 있어도 그 기재를 삭제하거나 정정을 해서는 안 되고, 사망하여도 씨명란에 「亡」자를 붙이지 않는다. 한편, 名에 토(일

본어 가나표기)가 붙어 있는 자가 필두자일 경우에도 씨명란에는 편의상 토를 생략하여도 지장이 없다. 氏의 변경(호적법 제107조 제1항)이 있었을 경우에는 호적사항란에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변경 전의 씨 문자 중앙에 朱線을 긋고 경정한다.

결국, 호적필두자의 승계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호적을 새로 편제하지 않는다.

다. 호적사항란

그림에서 ③으로 표시한 부분이 호적사항란이며, 호적 전체에 관한 사항을 위해서 설정된 난으로 신호적의 편제, 씨 변경, 전적, 호적 전부의 삭제, 호적의 전부와 관련된 정정, 호적재제 또는 개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호적법 시행규칙 제34조).

신호적 편제사항 중 호적편제일은 신고서 접수일이 아니라 실제로 호적을 편제한 날을 기재한다. 예를 들어 다른 시·읍·면에서 수리하여 송부된 신고서에 의거하여 호적을 편제하는 경우에는 그 송부받은 날이 된다.

하나의 호적에 기재되는 자는 필두자와 동일한 성을 칭하는 자이므로, 성에 관한 사항은 등재된 자 전원에게 공통되는 사항이다. 따라서 성씨 변경(호적법 제107조)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변경사항은 호적사항란에 기재하게 된다.

전적은 본적을 이전하는 것이므로 등재된 자 전원에게 공통되는 사항이다. 전적에는 관외전적(본적을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는 경우)과 관내전적(본적을 동일한 시읍면 내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경우)이 있으나, 관내전적의 경우에는 호적편제변경을 할 필요가 없으며, 호적사항란에 전적사항을 기재하고 본적란의 본적 기재를 경정하면 된다.

하나의 호적에 있는 등재된 자 전원이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제적되면 해당 호적은 제적이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호적사항란에 삭제사항을 기재하고(호적법시행규칙 제40조 제2항), 호적부에서 빼내어 제적인을 날인(호적법 시행규칙 제42조), 제적부로 보존하게 된다(호적법 제12조).

호적정정에는 호적 일부에 관한 경우와 호적 전부에 관한 경우(예 혼인 또는 양자결연으로 부부(또는 養子夫婦)에 대해서 신호적이 편제된 후, 해당 혼인 또는 양자결연에 대하여 무효재판이 확정되어 이에 의해 호적정정신청으로 해당 신호적을 삭제하는 경우) 등이 있으나, 후자의 경우에는 사건 본인의 신분사항란에 혼인 또는 양자결연무효에 의한 호적정정사항을 기재한 다음, 호적사항란에 해당 호적의 삭제사항을 기재하고 제적시키게 된다.

라. 성명란

그림에서 ④로 표시한 부분이며, 남편이나 아내, 자녀의 성명을 기록한다. 이 때, 성은 성명란에 기록하고 있으므로, 기록하지 않고 이름만을 기록한다.

마. 부(父)란과 모(母)란

그림에서 ⑤ 및 ⑥으로 표시한 부분이며, 부(父)란에는 성명란에 기록한 자의 부의 성명을 기록하고, 모(母)란에는 모의 성명을 기록한다.

특별양자에 대해서는 양부모의 성명을 기재하고, 친부모의 성명은 기재하지 않는다. 다만, 특별양자와 파양을 한 경우, 파양 후의 호적에는 양자결연 이전의 친부모 성명을 기재하게 된다.

자가 적자이고 부모가 혼인중일 경우(부모의 성씨는 동일하다), 그 성씨는 父에만 기재하고, 母에 대해서는 생략한다. 적자가 아닌 子의 경우에는 父란이 공란이 된다. 父의 인지가 있었을 경우에는 父란에 그 성명을 기재하게 된다. 다만, 母의 성씨는 그대로이다.

기재 후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 종래에는 子, 법정대리인 또는 사망 신고의 신고인으로부터 특별히 신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부모란에 「亡」의 자를 기입하여도 좋다고 되어 있었으나, 이는 폐지되었다. 따라서 혼인, 양자결연, 전적 등에 따른 신호적 편제, 여타 호적으로의 입적 또는 호적재제의 경우에 종전 호적의 부모(양부모)란에 「亡」의 문자가 기입되어 있어도 이것의 이기(移記)를 요하지 않는다.

부 또는 모가 姓氏 혹은 名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 변경신고에 의거하여 즉시 子의 신분사항란에 그 내용을 기재한 다음, 부·모의 성씨·명을 경정할 수가 있다.

바. 부모와 관계란

그림 ⑦에는 성명란에 기록한 자와 그 부모와의 관계를 기록한다. 법률혼에서 낳은 자녀(적출자)는 '장남,' '이남,' '장녀,' '이녀' 등으로 기록하고, 사실혼에서 낳은 자녀(비적출자)는 '남,' '여'로 성별만을 기록한다. 양자는 '양자,' '양녀'로 기록한다.

또한, 특별양자에 대해서는 양부모와의 관계를, 적자의 예에 따라 기재한다. 이것은 양자는 특별양자결연이 성립됨으로써 친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종료되므로(민법 제817조의9), 법률상 유일한 부모인 양부모와의 관계를 적자의 예에 따라 기재하여도 호적 표시상 특별히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이와 같이 기재하는 것이 특별양자결연의 취지와도 합치가 되므로, 이와 같이 취급하도록 한 것이다. 특별양자와 파양을 한 경우에 파양 후의 호적에는 친부모와의 관계를 기재하게 된다.

부모와의 관계를 세는 방법에 대해서는 동일한 부모인 부부별로 그사이의 자에 대해서만 세고, 부 또는 모 중에서 일방만이 동일한 자는 산입하지 않는다. 따라서, 先妻의 子와 後妻의 자는 별도로 「長男」 또는 「長女」로 한다. 命名 전에 사망한 子도 산입한다. 한편, 쌍둥이는 출생 전후에 따라 그 관계를 정한다.

신고가 누락된 자에 대해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이미 기재된 부모와 관계를 정정하여야 한다. 준정의 경우에도 그 자가 부모와 동일 호적에 있느냐 없느냐를 불문하고 정정하여야 한다

부모와의 관계는 호적법시행규칙 부록 제6호(호적기재양식)에 따르면 오른쪽부터 가로쓰기(橫書)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세로쓰기(縱書)로 하여도 상관이 없다. 또한 二男(女)의 「二」는 「次」로 기재하여도 괜찮다.

사. 출생란

그림에서 ⑧로 표시한 부분이며, 성명란에 기록한 자의 생년월일을 일본연호로 기록한다.

출생 연월일은 신분사항란에도 기재되므로 그 연월일과 본란의 연월일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 출생신고서에는 출생 연월일 이외에 출생시각까지 기재가 되나(호적법시행규칙 제59조), 호적에는 출생 연월일만을 기재하고 시각은 기재되지 않는다.

아. 신분사항란

그림에서 ⑨로 표시한 부분이며, 호적사항란에 기록할 내용의 모든 신분사항을 기록한다. 등재된 각자의 출생, 혼인, 이혼, 입양, 파양, 사망 등의 사항을 기록한다(호적법시행규칙 제35조, 제36조, 제38조, 제40조, 제44조). 또한, 상호적을 편제할 때는 전호적과 연결하기 위하여 전호적의 본적을 기록한다.

본란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기입하여 각자의 신분관계에 대한 변동 경과를 명백히 하려고 하는 것이다. 즉, 다른 난에 대한 기재는 현재의 상태를 표시하려고 하는 것으로, 기재 후 그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삭제, 정정 또는 추가하여 항상 그 기재를 현재 상태와 일치시키려고 하지만(예를 들면 행정구획, 토지명칭 등의 변경에 따른 본적란의 경정, 씨 또는 명의 변경에 따른 호주 성명란 또는 각 난의 경정 혹은 부모란의 경정, 혼인해소에 따른 배우자 난의 삭제 등), 신분사항란의 기재에서는 과거의 기재를 삭제시키지 않고 새로운 사항을 추가하여 기입하는데 그치고 있다.

어떠한 사항을 누구 신분사항란에 기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 (1)부터 (18)항까지는 호적법시행규칙 제35조에 열거되어 있다.

(1) 출생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子

출생은 사람의 권리능력취득의 시기이고, 출생신고는 사람이 최초로 호적에

기재되는 사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출생에 관한 사항은 자의 신분사항란 첫 행에 기재가 되며, 이후에는 호적에 변경 등이 있더라도 출생사항은 항상 신분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각자 호적의 신분사항란 처음에 기재된다(호적법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제1호). 출생에 관한 사항은 친자관계 및 이를 기초로 여타 친족관계 혹은 일본국적 공증 등과도 관계가 되므로 중요한 사항이다.

(2) 인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父 및 子

인지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자의 신분사항란에만 기재되었으나, 현재는 父 또는 子 쌍방의 신분사항란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구법 당시에는 자가 父로부터 認知를 받게 되면 원칙적으로 父의 호적에 입적되었으나(구 민법 제733조 제1항), 신법에서는 인지 받은 자라고 하여도 반드시 父와 호적을 같이 한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 주요한 이유이다.

(3) 양자결연(특별양자결연은 제외) 또는 그 파양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養親 및 養子

양자결연 또는 파양사항에 대해서 종전에는 養親의 신분사항란에는 기재되지 않았으나, 신법에서는 양자는 반드시 양친의 호적에 입적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호적법 제20조), 인지의 경우와 동일한 이유로 양친의 신분사항란에도 이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4) 특별양자결연 또는 그 파양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養子, 양자가 일본

인이 아닌 자(즉 외국인)일 경우에는 養親

특별양자결연의 경우에는 양친이 되는 자는 반드시 배우자가 있는 자(부부로서 양자결연이 가능한 자)가 아니면 안 되는 한편, 양자는 심판청구시에 원칙적으로 6세 미만이어야 하며, 또한 양자는 반드시 양친의 호적에 입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예외 : 특별양친 또는 특별양자가 외국인일 경우) 특별양자결연이 성립되었다는 사실을 호적으로 공증하기 위해서는 양자의 신분사항란에만 양자결연사항을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동적의 양친의 신분사항란에 양자결연사항을 기재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특별양자결연 또는

그 파양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자의 신분사항란에만 기재하면 족하다. 또한, 특별양자가 일본인이 아닌 경우, 즉 외국인일 경우에는 양자의 호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양친의 신분사항란에 양자결연 사항을 기재한다.

(5) 호적법 제73조의2(제69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에서 규정하고 있는 파양을 할 때, 호칭하던 성씨를 호칭하는 것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성씨를 칭하던 者

파양시에 호칭하던 성씨를 호칭하겠다는 신고는 양자결연일로부터 7년 경과 후에 파양으로 인해 復氏(復姓)를 한 자가 復姓한 호칭을 파양시에 호칭하던 성씨와 동일한 호칭으로 변경할 목적으로 행하는 신고이나, 성씨변경에 대해서는 가정재판소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호적법 제10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씨변경에 대한 특칙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호적법시행규칙 제34조 제2호의 「성씨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호적사항란에 기재한다.

(6) 혼인 또는 이혼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夫 및 妻

혼인으로 부부는 동일한 성씨를 호칭하고(민법 제750조) 동일한 호적에 편제된다. 또한,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시에 성씨를 변경한 처 또는 夫는 혼인전의 성씨로 복귀하게 되며(민법 제767조 제1항), 이에 따라 호적도 변경이 되나(호적법 제19조 제1항), 혼인 및 이혼은 창설적이고 쌍방적인 신분행위이므로 그 사항은 夫 및 妻 쌍방의 신분사항란에 기재된다.

(7) 호적법 제77조의 2(제75조의 2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을 할 때, 호칭하던 성씨를 호칭하는 것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성씨를 칭하던 者

이혼시에 호칭하던 성씨를 호칭하려는 신고는 이혼으로 復姓을 한 자가 그 복성한 성씨의 호칭을 이혼시에 호칭하던 성씨와 동일한 호칭으로 변경할 목적으로 하는 신고이며, 성씨변경에 대해서 가정재판소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호적법 제10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씨변경에 대한 특칙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신고는 이혼으로 인하여 復姓을 한 신분

법상의 지위에 있는 자가 하는 것이므로 호적기재는 신고를 한 자의 신분사항란에 기재를 하여야 한다.

또한, ① 이혼으로 復姓을 해야 할 자가 이혼신고와 동시에 상기의 신고를 한 경우, ② 이혼신고로 복적을 한 자가 상기의 신고를 한 경우에 그 자가 호주가 아닌 경우 또는 ③ 그 자가 호주이나 그 호적에 同籍者가 있는 경우에는 모두 그자에 대해서 신호적을 편제하게 되나(호적법 제19조 제3항), 이혼시에 호칭하던 성씨를 호칭하려는 신고는 전술한 바와 같이 호적법 제107조 제1항의 성씨변경에 대한 특칙이고, 호적법시행규칙 제34조 제2호의 '성씨변경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므로, 상기의 신고사항을 호적사항란에 기재를 하게 된다. 같은 이유로 상기의 신고를 한 자가 이미 호적에 필두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호적에 동적자가 없는 경우에는 호적사항란에 상기의 신고사항을 기재함과 동시에 필두자 성명란의 성씨기재를 경정한다. 이것은 이혼취소로 인해 복성을 한 자가 상기의 신고를 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8) 친권, 후견 또는 보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무능력자

친권, 후견 및 보좌제도는 무능력자 보호제도이며, 동시에 제3자 보호제도이다. 호적법상 위 각 신고당사자는 친권자와 미성년자, 후견인 또는 보좌인과 무능력자이나, 호적기재는 무능력자, 즉 미성년자, 금치산자, 준금치산자의 신분사항란에만 하게 된다.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누구인가 혹은 무능력자인지 아닌지, 만약 무능력자라면 후견인 등이 누구인가는 해당 미성년자 또는 무능력자의 호적기재로 인하여 명확해지므로 공시에 있어서 특별히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9) 사망 또는 실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망자 또는 실종자

사망은 사람의 권리능력의 유일한 종료원인을 의미하며, 실종 또한 일정간 생사불명상태에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정한 절차하에서 법적으로 사망을 의제하는 것이므로(민법 제30조, 제31조), 사망의 경우와 동일한 법적 효과가 있다.

사망 또는 실종에 관한 사항은 사망자 또는 실종자의 신분사항란에 기재함

과 동시에 즉시 그 名欄(배우자가 있는 자는 배우자 난에 걸쳐서)에 빨간색 선을 교차시켜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호적법 제23조, 호적법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제42조). 또한 배우자가 있는 자가 사망 또는 실종된 경우에는 생존 배우자의 신분사항란에 夫 또는 妻 사망 또는 사망으로 간주된다는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호적법시행규칙 제36조 제1항), 이러한 기재는 혼인해소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며, 본항에서 말하는 사망 또는 실종에 관한 사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10) 생존 배우자의 復氏 또는 혼인관계 종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생존배우자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① 생존배우자가 혼인에 따라 성씨를 변경한 자일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자유롭게 혼인 전 성씨로 복귀할 수가 있고(민법 제751조 제1항), 또한 ② 생존배우자(그것이 夫인지 妻인지, 혼인시에 성씨를 변경한 자인지 아닌지는 불문)는 인척관계종료를 의사표시함으로써 사망배우자 혈족과의 사이에 친족관계를 소멸시킬 수가 있다(민법 제728조 제1항). 그리고 이러한 의사표시는 시·읍·면장에게 신고를 하여 이루어지나(호적법 제95조, 제96조), 모두 단독행위이므로 신고당사자의 신분사항란에 생존배우자의 復姓 또는 혼인관계 종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면 된다.

또한, 생존배우자의 復姓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혼인 전 성씨로의 復姓 또는 신호적을 편제하게 되므로(민법 제751조 제1항, 호적법 제19조 제1항, 제2항), 복성에 관한 호적기재는 혼인 후 및 復姓 이후의 각 호적에 이루어진다. 그러나 혼인관계 종료신고로는 호적에 변동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인척관계종료에 관한 호적기재는 그 자의 현재 호적에 하면 된다.

(11) 推定상속인의 廢除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廢除된 者

遺留分을 지니는 추정상속인(즉, 직계비속, 직계존속 및 배우자)에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피상속인은 가정재판소의 심판 또는 조정을 받아 그자를 자기의 상속인으로부터 廢除시킬 수가 있다(민법 제892조, 가사심판법 제

9조 제1항 을류 제9호, 제17조). 그리고 이와 같은 심판 또는 조정이 확정(성립)되었을 경우에는 심판 또는 조정의 신청인(즉 피상속인)은 시·읍·면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지만(호적법 제97조), 이 신고로 인하여 호적변동을 일으킬 수는 없으며, 廢除된 자의 신분사항란에 그 내용이 기재될 뿐이다. 이것은 추정상속인의 廢除취소(민법 제894조 제1항)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피상속인의 호적(신분사항란)에는 아무런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한 것은 廢除者의 호적(신분사항란)에 기재된 바로 공시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12) 호적법 제98조 또는 제9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入籍者

입적에는 ① 부 또는 모와 성을 달리하는 자가 가정재판소의 허가를 얻어 그 부 또는 모의 성을 호칭하고 입적신고를 하는 경우(민법 제791조 제1항, 제3항, 호적법 제98조), ② 부 또는 모가 성을 변경하였기에 자가 부모와 성을 달리하는 경우에 자가 혼인중인 부모의 성을 호칭하고 입적신고(이러한 경우 가정재판소의 허가 불필요)를 하는 경우(민법 제791조 제2항, 호적법 제98조), ③ 위 ①,②의 신고로 부 또는 모 혹은 부모의 호적에 입적된 자가 성년이 되고 나서 1년 이내에 종전의 성으로 복귀하고 그 호적에 입적신고(이러한 경우 가정재판소의 허가 불필요)를 하는 경우(민법 제791조 제4항, 호적법 제99조), ④ 부모(부 또는 모)와 동적으로 한다는 내용의 입적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어떠한 신고든 입적에 관한 사항은 입적된 자의 신분사항란에 기재하게 된다.

(13) 分籍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分籍者

호적의 필두자 및 그 배우자 이외의 자로서 성년이 된 자는 분가(分籍)가 인정되고 있다(호적법 제21조 제1항). 그리고 분가신고(호적법 제100조)가 이루어진 경우 단독으로 신호적이 편제되므로(호적법 제21조 제2항), 분가에 관한 호적기재는 분가 전 호적에는 그의 신분사항란에 제적사항, 분가 이후의 신호적에는 호적사항란에 호적편제사항(호적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호) 및

신분사항란에 입적사항이 각각 기재가 되나, 여기서 말하는 분가에 관한 사항은 위 분가 이전 및 분가 이후의 각 호적 중 분가한 자의 신분사항란에 이루어지는 호적기재이다.

(14) 국적 취득·상실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적을 취득하거나 또는 상실한 者

국적의 취득·상실이란 출생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일본 국적을 취득하거나 또는 상실하는 경우를 말하며, 그 득실에 관한 사항은 법무장관에 대한 신고로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국적취득신고(호적법 제102조)에 따라,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에 대해서는 귀화신고(호적법 제102조의2)에 따라, 자기희망에 의한 외국국적취득, 이중국적자의 외국국적 선택, 일본국적 이탈, 국적 불선택 및 일본국적 상실신고에 의한 일본국적상실에 대해서는 국적상실신고(호적법 제103조) 또는 국적상실보고(호적법 제105조)에 의해 각각 국적을 취득한 자 또는 상실한 자의 신분사항란에 기재하게 된다. 국적상실자에 대해서는 신고 또는 보고에 의해 호적에서 제적되게 된다(호적법 제23조, 호적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제42조).

(15) 일본국적선택선언 또는 외국국적 상실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선언을 한 자 또는 상실한 자

이는 1984년 법무성령 제40호(1985. 1. 1. 시행)에 의해 신설된 것이다. 즉,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적법 및 호적법 일부를 개정된 법률(1984년 법률 제45호)에 의해 신설된 ① 국적선택신고(호적법 제104조의2), 또는 ② 외국국적상실신고(호적법 제106조)가 이루어진 경우의 호적기재사항이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외국국적을 지닌 일본인이 일본국적을 선택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본국적선택선언, 즉, 국적선택신고를 하거나 또는 외국국적을 이탈하고 그 내용, 즉 외국국적상실신고를 한 경우에 그자 호적의 신분사항란에 기재한다.

(16) 호적법 제107조 제2항 내지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씨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씨를 변경한 자

이것도 1984년 법무성령 제40호로 신설된 것으로 1984년 법률 제45호에 의해 신설된 ① 외국인과의 혼인에 따른 성씨변경신고(호적법 제107조 제2항), ② 외국인과의 이혼으로 인한 성씨변경신고(호적법 제107조 제3항), ③ 외국인 부모 성씨로의 성씨변경신고(호적법 제107조 제4항)가 이루어진 경우의 호적기재사항이다. 이러한 성씨변경신고는 사건본인인 외국인과의 신분관계에 의거한 것으로 그 효과는 사건본인에만 미치게 되므로 상기의 성씨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건본인 호적의 신분사항란에 기재를 요한다.

(17) 이름(名)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름을 변경한 자

이름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변경된 자의 신분사항란에만 기재를 하면 된다. 이것은 예를 들면 호적의 필두자가 이름을 변경한 경우에도 동일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이름란의 이름에 대한 경정과 동시에 필두자 성명란의 이름도 경정을 하나, 호적사항란에는 아무런 기재를 요하지 않는다.

(18) 就籍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취적자

일본인이면서 출생신고 누락 등으로 인하여 본적(즉 호적)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가정재판소의 취적허가심판을 얻어(호적법 제110조) 또는 확정판결로(호적법 제111조) 새로이 호적을 편제할 수 있으나, 이러한 취적은 취적자 본인에게만 관련이 되는 사항이므로 그 자의 신분사항란에만 취적사항을 기재하면 된다.

(19) 사망으로 인해 혼인이 해소되었다는 내용의 기재에 대해서는 생존배우자(호적법시행규칙 제36조 제1항).

부부 중 일방의 사망으로 혼인이 해소되었을 때 그 사실을 호적상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생존 배우자의 신분사항란에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혼인이 해소되었다는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부부 중 일방에 대해서 실종선고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인일 경우에 그 외국인의 배우자가 일본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자의 사망신고서에 의거하여 일본인인 夫 또는 妻의 신분사항란에 혼인해소사실을 기재한다. 또한, 외국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일본인인 夫 또는 妻가 사망을 증명하는 자료

를 첨부하여 혼인해소사항기재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이에 의거하여 시·읍·면장은 직권으로 이러한 기재를 한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인일 경우 호적에 사망 배우자는 동적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혼인해소사항을 기재하지 않으면 마치 혼인이 계속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20) 夫 또는 妻가 외국인일 경우 해당 夫 또는 妻의 국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 또는 夫(호적법시행규칙 제36조 제2항)

부부 중 일방이 외국인일 경우에는 일본인인 배우자의 신분사항란에 외국인인 夫 또는 처의 국적을 표시한다. 현행 국적법하에서 외국인은 일본인과 혼인을 하여도 당연하게는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없으며, 따라서 부부는 동적하지 않으므로, 그 외국인인 배우자가 어디의 누구인지를 특정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동일한 취지로 일본인 부부 중 일방이 혼인 후에 일본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한 경우에는 일본인인 배우자의 신분사항란에 '夫(또는 처)국적 미합중국 印'과 같은 형식으로 기재를 하여야 한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인일 경우에 그 자가 혼인 후에 국적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대한 신고에 의거하여 일본인인 배우자의 신분사항란에 '夫(또는 처) 귀화에 의해 프랑스 국적취득 년 월 일 기재 印'과 같은 형식으로 기재한다. 국적표시방법에 대해서는 헌법상 기타 정식명칭이 아니라 소위 국명(약칭)만을 기재하면 족하다.

(21) 신호적이 편제되거나 또는 여타 호적에 들어갈 자의 입적에 관한 사항 및 종전 호적에 대한 표시에 대해서는 그 자(호적법시행규칙 제38조).

(22) 제적사유에 대해서는 제적자(호적법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23) 호적 일부를 정정해야될 경우의 정정 취지 및 사유에 대해서는 정정해야될 기재가 되어 있는 자(호적법시행규칙 제44조)

4. 호적신고

호적기재는 통상적으로 호적신고에 의하고(호적법 제15조), 그 신고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가. 출생신고

(1) 적출자의 출생신고

적출자의 출생신고는 자의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부 또는 모가 하며(호적법 제49조), 자의 출생 전에 부모가 이혼을 한 경우에는 모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호적법 제52조 제1항). 처가 혼인중에 포태한 자는 남편의 자로 추정하고(민법 제772조 제1항), 혼인성립일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해소 혹은 취소일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동조 제2항). 출생시에 친족법상의父가 일본 국민인 경우에는 그 자녀는 태어나면서 일본 국민이 되며, 그父가 없는 경우에는(혼외자) 생모가 일본인이라면 그 자는 태어나면서 일본 국민이 되므로 모두 호적에 등재된다.

(2) 적출자 아닌 자의 출생신고

적출자 아닌 자의 출생신고는 모가 한다(호적법 제52조 제2항)

(3) 자의 성씨

적자인 자는 부모의 성씨를 칭한다. 단, 자의 출생 이전에 부모가 이혼을 한 경우에는 이혼 당시 부모의 성씨를 칭한다(민법 제790조).

(4) 자의 성씨 변경

자가 부 또는 모와 성씨를 달리하는 경우에 자는 가정재판소의 허가를 얻어, 호적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그父 또는 母의 성씨를 칭할 수가 있다(민법 제791조 제1항). 부 또는 모가 성씨를 변경함에 따라 자가 부모와 성씨를 달리하는 경우에, 자는 부모의 혼인중에 한하여 가정재판소의 허가를 얻지 않아도 호적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그 부모의 성씨를 칭할 수가 있다(동조 제2항).

나. 인지신고

적자가 아닌 자는 그 부 또는 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다(민법 제779조).

(1) 인지 방식

인지는 호적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로서 한다(민법 제779조 제1항). 인지는 유언에 의해서도 이를 할 수가 있다(동조 제2항).

(2) 성년자의 인지

성년인 자는 그의 승낙이 없으면 이를 인지할 수가 없다(민법 제782조).

(3) 태아 또는 사망자의 인지

부는 태내에 있는 자라도 이를 인지 할 수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모의 승낙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민법 제783조 제1항). 부 또는 모는 사망한 자라고 하여도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지할 수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성년자일 경우에는 그의 승낙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동조 제2항).

(4) 인지의 효력

인지는 출생 당시에 그 효력이 발생된다. 단,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다(민법 제784조).

(5) 인지 철회 금지

인지를 한 부 또는 모는 그 인지를 취소할 수 없다(민법 제785조).

(6) 준정

부가 인지한 자는 그 부모의 혼인에 따라 적자신분을 취득한다(민법 제789조 제1항). 혼인중 부모가 인지한 자는 그 인지시기부터 적자신분을 취득한다(동조 제2항).

(7) 적출자의 출생신고와 인지의 효력

적출자인 자에 대하여 부모가 적출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 그 신고는 인지신고의 효력을 지닌다(호적법 제62조).

(8) 섭외인지

적출이 아닌 자의 친자관계의 성립은 부와의 사이의 친자관계에 대하여는

자의 출생 당시의 부의 본국법에 의하고, 모와의 사이의 친자관계에 대하여는 그 당시의 모의 본국법에 의한다. 자의 인지로 인한 친자관계의 성립에 대하여는 인지 당시의 자의 본국법이 그 자 또는 제3자의 승낙 또는 동의가 있을 것을 인지의 요건으로 하는 때에는 그 요건도 갖출 것을 요한다(국제사법 제18조 제1항). 자의 인지는 전항 전단에 정한 법률 외에 인지 당시의 인지하는 자 또는 자의 본국법에 의한다. 이 경우에 인지하는 자의 본국법에 의하는 때에는 전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동조 제2항). 부가 자의 출생 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 당시의 부의 본국법을 제1항의 부의 본국법으로 간주하고, 전항에 열거한 자가 인지 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 당시 그 자의 본국법을 동항의 그 자의 본국법으로 간주한다(동조 제3항).

다. 입양신고

(1) 양자결연 요건

(가) 양자를 할 능력

성년에 달한 자는 양자를 들일 수가 있다(민법 제792조).

(나) 존속 또는 연장자의 양자 금지

존속 또는 연장자를 양자로 할 수는 없다(민법 제793조).

(다) 후견인, 피후견인 사이의 양자결연

후견인이 피후견인(미성년 피후견인 및 성년 피후견인을 말한다)을 양자로 하기 위해서는 가정재판소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후견인의 임무가 종료된 이후, 아직 관리에 대한 계산이 종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동일하다(민법 제794조).

(라) 배우자 있는 자의 미성년자 양자 결연

배우자가 있는 자가 미성년자를 양자로 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함께 해야 한다. 단, 배우자의 적자인 자를 양자로 하는 경우 또는 배우자가 그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민법 제795조).

(마) 배우자가 있는 자의 양자 결연

배우자가 있는 자가 양자결연을 하기 위해서는 그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배우자와 함께 양자결연을 하는 경우 또는 배우자가 그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민법 제796조).

(바) 15세 미만 자의 양자

양자가 될 자가 15세 미만일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대신하여 양자결연에 대한 승낙을 할 수가 있다(민법 제797조 제1항). 법정대리인이 양자결연에 대하여 승낙을 하려면 양자가 될 자의 부모로, 그 보호(양육)를 하는 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동조 제2항).

(사) 미성년 양자

미성년자를 양자로 하기 위해서는 가정재판소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단,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민법 제798조).

(아) 재외 일본인간의 양자 결연 방식

외국에 있는 일본인 사이에서 양자결연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나라에 주재하는 일본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그 신고를 할 수가 있다(민법 제801조).

(2) 양자결연신고

결연을 하려고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호적법 제66조).

(3) 섭외입양

입양은 입양 당시 양친의 본국법에 의한다. 만약 양자의 본국법이 입양의 성립에 대하여 양자나 제3자의 승낙 또는 동의 또는 공공기관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때에는 그 요건도 구비할 것을 요한다(국제사법 제20조 제1항).

라. 파양신고

파양신고(호적법 제70조 이하)가 이루어지면 양친과 양자의 각 신분사항란에 각각 상호간에 그 내용이 기재된다. 양자는 파양에 의해서 양자결연 이전

의 姓으로 복귀하므로(민법 제816조), 양자결연 이전의 친부모 호적으로 돌아간다. 이 경우, 양친의 호적과 친부모 호적의 신분사항란에는 호적 상호간의 색인적 연결기재가 이루어진다.

다. 혼인신고

혼인신고(창설적 신고)가 이루어지면 혼인이 성립되며, 새로운 부부에 대해서 신호적을 편제한다(호적법 제16조). 이것이 새 부부에 대한 혼후 호적이 된다. 부부에 대한 혼후 호적과 종전의 혼전호적의 각 신분사항란에 호적 상호간의 색인적 연결기재가 이루어진다.

(1) 혼인요건

(가) 혼인적령에 달하였을 것

남자는 만18세, 여자는 만16세가 아니면 혼인을 할 수 없다(민법 제731조)

(나) 중혼이 아닐 것

배우자 있는 자가 이중으로 혼인을 할 수 없다(민법 제732조).

(다) 여자의 재혼금지기간 내의 혼인이 아닐 것

여자는 혼인의 해소 또는 취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으면 재혼을 할 수 없다(민법 제733조 제1항). 여자가 전혼의 해소 또는 취소되기 이전부터 포태하고 있었을 경우에는 그 출산일로부터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민법 제733조 제2항).

(라) 근친 간의 혼인이 아닐 것

직계혈족 또는 3촌 내 방계혈족 간에는 혼인을 할 수가 없다. 단, 양자와 양자측 방계혈족 사이에서는 그렇지 않다(민법 제734조 제1항). 제817조의9 규정에 의해 친족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동일하다(민법 제734조 제2항).

(마) 직계인족 간의 혼인 금지

직계인족 사이에서는 혼인을 할 수 없다. 제728조 또는 제817조의9 규정에 의해 인족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동일하다(민법 제735조)

(바) 양친자관계자 사이의 혼인 금지

양자, 그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그 배우자와 양친 또는 그 직계비속 사이에서는 제729조 규정에 의해 친족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혼인을 할 수 없다(민법 제736조)

(사) 미성년자의 혼인시 부모의 동의를 요할 것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려면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모 중 일방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만으로 족하다. 부모 일방을 알지 못할 경우, 사망한 경우 또는 그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동일하다(민법 제737조).

(아) 성년 피후견인의 혼인

성년 피후견인이 혼인을 하는데 있어서 그 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민법 제738조)

(자) 혼인신고

혼인은 호적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제739조 제1항). 그 신고는 당사자 쌍방 및 성년의 증인 2사람 이상으로부터 구두 또는 서명을 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민법 제739조 제2항).

(차) 혼인신고의 수리

혼인신고는 그 혼인이 민법 제731조 내지 제737조 및 제739조 제2항 규정, 기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인정된 이후가 아니면, 이를 수리할 수 없다(민법 제740조).

(카) 재외 일본인간의 혼인 방식

외국에 있는 일본인끼리 혼인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그 나라에 주재하는 일본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그 신고를 할 수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앞의 2조 규정을 준용한다(민법 제741조).

(2) 혼인의 효력

(가) 부부의 성씨

부부는 혼인시에 정한 바에 따라 부 또는 처의 성씨를 칭한다(민법 제750

조)

(나) 생존 배우자의 復姓, 復姓 시의 祭具 등의 승계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생존 배우자는 혼인 이전의 성씨로 복귀할 수 있다(민법 제751조 제1항).

(다) 동거·부조의 의무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협력하여 부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민법 제752조).

(라) 혼인에 따른 성년의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경우에는 이로써 성년에 달한 것으로 간주한다(민법 제753조)

(마) 부부간의 계약취소권

부부 사이에서 계약을 한 경우에 그 계약은 혼인중에 언제라도 부부 중 일방이 이를 취소할 수가 있다. 다만,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다.

(3) 섭의 혼인

(가) 혼인의 성립요건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이 이를 정한다(국제사법 제13조 제1항).

(나) 혼인의 방식

혼인의 방식은 혼인거행지의 법률에 의한다.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에 의한 방식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효로 한다. 단, 일본에서 혼인을 거행한 경우 당사자의 일방이 일본인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국제사법 제13조 제2항, 제3항).

(다) 혼인의 효력

혼인의 효력은 부부의 본국법이 동일한 때에는 그 법률에 의하고, 그 법률이 없는 경우 부부의 거소지법이 동일한 때에는 그 법률에 의한다. 그 어느 법률도 없는 때에는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의 법률에 의한다(국제사법 제14조)

바. 이혼신고

이혼신고(호적법 제76조 이하)가 이루어지면 혼인에 의해서 姓을 바꾼 夫 또는 妻는 혼인 전의 姓에 따르며, 혼인호적에서 혼전호적으로 돌아간다. 다만, 그 혼전호적이 제적되어 있는 경우 또는 그 者가 신 호적편제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호적을 편제한다(호적법 제19조 제1항). 혼후 호적과 혼전호적 또는 이혼 후의 신호적의 각 신분사항란에는 호적 상호간의 색인적 연결기재가 이루어진다. 이혼시에 혼인 전의 姓으로 복귀한 夫 또는 妻는 이혼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 성씨를 칭하는 신고를 하면 이혼시에 칭하던 姓을 칭할 수가 있다(민법 제767조 제2항, 호적법 제77조의2). 이러한 경우에는 그 者에 대해서 신호적을 편제하게 된다(호적법 제19조 제3항).

(1) 협의상 이혼

부부는 협의하여 이혼을 할 수 있다(민법 제763조).

(가) 이혼신고의 수리

이혼신고는 그 이혼이 제739조 제2항 및 제819조 제1항 규정, 기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인정된 이후가 아니면 이를 수리할 수 없다(민법 제765조 제1항). 이혼신고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수리되었을 경우에도 이혼은 이 때문에 그 효력을 방해받지 않는다(동조 제2항).

(나) 자의 보호자(양육자) 결정

부모가 협의이혼을 할 경우에는 자를 양육할 자, 기타 양육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민법 제766조 제1항). 자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가정재판소는 자를 양육할 자를 변경하거나, 기타 양육에 대해서 상당한 처분을 명할 수가 있다(동조 제2항).

(다) 이혼과 성

혼인으로 성씨를 변경한 夫 또는 妻는 협의이혼에 따라 혼인 이전의 성씨로 복귀한다(민법 제767조 제1항). 혼인 이전의 성씨로 복귀한 夫 또는 妻는 이혼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호적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신고를 함으로써 이혼시에 호칭하던 성씨를 칭할 수가 있다(동조 제2항).

(라) 이혼에 의한 復姓 시 祭具 등의 승계
혼인에 따라 성을 변경한 부 또는 처가 제897조 제1항의 권리를 승계한 후, 협의상 이혼을 한 경우에는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협의로 그 권리를 승계할 자를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민법 제767조 제1항).

(2) 재판상 이혼

(가) 이혼사유

- ①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②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유기를 한 경우
- ③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명확한 경우
- ④ 배우자가 심한 정신병에 걸려서 회복의 기미가 없는 경우
- ⑤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나) 자의 보호자(양육자) 결정, 이혼과 성, 이혼에 의한 復姓 시 祭具 등의 승계 등의 규정은 재판상 이혼에 이를 준용한다(민법 제771조).

(3) 섭외이혼

국제사법 제14조의 규정은 이혼에 이를 준용한다. 단, 부부의 일방이 일본에 상거소를 가진 일본인인 때에는 이혼은 일본의 법률에 의한다(국제사법 제16조)

사. 친권·후견신고

성년이 안 된 자녀는 부모의 혼인중에는 그 공동친권에 따른다. 이 경우 부모도 자녀도 동일호적에 기재되어 그 부모가 친권자라는 사실이 명백하므로, 특별히 친권자에 대한 기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부모가 이혼을 하면 부모의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해 부모 중 일방이 친권자로 정해진다. 이 경우에는 부모는 호적을 달리하게 되므로, 그 부모 중 누가 친권자인지를 공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친권신고가 이루어지며(호적법 제78조), 이에 의하여 '자의 호적'의 자의 신분사항란에 그 친권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기재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경우 '친권자 호적'의 친권자의 신분사항란에는 이러한 내용

에 대한 기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후견의 경우에도 동일하다(호적법 제81조 이하).

아. 사망, 실종신고

사망신고(호적법 제86조 이하)가 이루어지면 사망자의 신분사항란에 사망일시·장소가 기재된 후, 사망자는 사망시의 호적에서 제적된다(호적법 제23조). 여기에서 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者의 '이름란'에 朱線을 교차시키는 것이다(호적법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그 결과, 하나의 호적 내에 있는 등재된 자 전원이 제적되는 경우에는, 그 호적은 이를 호적부에서 빼내어 별도로 철하여 除籍簿로서 보존하게 된다(호적법 제12조 제1항, 호적법시행규칙 제40조 제2항).

예를 들면 '親(부부)·子'의 호적에서 그 子는 모두 혼인을 하여 그 호적에서 제적되었고, 夫도 사망하여 제적되었으며 妻만 남아 있는 경우, 그 妻가 사망하면 그 호적은 전원이 제적이 되었기에 제적부로 옮겨지는 것이다. 이 제적부의 보존기간은 해당 연도 다음해부터 80년이다(호적법시행규칙 제5조 제4항). 실종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동일하다(호적법 제94조).

자. 생존배우자의 복성(復姓)·혼족관계 종료

'생존배우자의 復姓'이란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배우자가 신고에 의해 혼인 전의 姓으로 복귀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이 신고(호적법 제95조)가 이루어지면 그 신분사항란에 그 내용이 기재되며, 생존배우자는 '혼후 호적'에서 '혼전호적'으로 돌아간다. 호적 상호간의 색인적 연결기재가 이루어진다.

'혼족관계 종료'란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배우자가 신고에 의해 혼족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고, 이 신고(호적법 제96조)가 이루어지면 그 신분사항란에 그 내용에 대한 기재가 이루어진다.

차. 추정상속인의 廢除

추정상속인의 폐제(민법 제892조) 또는 폐제취소(민법 제894조)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 신고가 필요하며(호적법 제97조), 이러한 경우에는 폐제된 者의 신분사항란에 그 내용이 기재된다.

카. 입적

부모가 이혼을 하면 부모는 姓을 달리하게 된다. 그子是 부모 중 일방의 姓을 칭하지만, 다른 일방의 姓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가정재판소의 허가를 얻어서 그 내용을 신고하면, 그子의 姓은 변경되며, 부모 중 일방의 호적에서 다른 일방의 호적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것이 입적신고이다(호적법 제98조).

타. 분가

'혼전호적'에 있는 者라도 성년이 되면, 희망에 따라 분가할 수가 있으며, 분가신고에 의해 신호적이 편제된다(호적법 제21조, 제100조). 분가 전 호적과 분가 후 호적 사이에는 호적 상호간의 색인적 연결기재가 이루어진다.

파. 국적의 득실

외국인이 귀화에 의해 일본 국적을 취득하면, 귀화신고(호적법 제102조)에 따라 새로운 호적을 편제하게 된다. 일본 국민이 일본 국적을 상실하면, 국적상실신고(호적법 제103조, 제105조)가 이루어지며, 그 者는 호적에서 제적된다(호적법 제23조).

하. 성명의 변경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姓을 변경하려고 할 경우에, 호적의 필두에 기재된 자 및 그 배우자는 가정재판소의 허가를 얻어 그 내용을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호적법 제107조). 이 성씨변경은 동일 호적 내 등재된 자 전원에게

영향이 미치므로, 호적사항란에 그 변경내용이 기재된다.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 이름을 변경하려고 하는 자는 가정재판소의 허가를 얻어, 그 내용을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호적법 제107조 제2항). 이 이름변경신고가 이루어지면, 그 자의 신분사항란에 그 변경내용이 기재된다.

거. 전적·취적신고

호적 소재장소(소재지 시·읍·면사무소)가 본적이지만, 그 본적을 변경(이동)하는 일을 전적이라고 한다. 전적을 하는 것은 자유이며, 전적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신분적을 신고서에 기재하여 호적필두자 및 그 배우자가 그 내용을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호적법 제108조). 전적의 경우 ① 구분적과 신분적이 모두 동일 시·읍·면내에 있는 경우에는 호적사항란에 전적에 대한 기재가 이루어지고, 본적란의 기재가 변경되어 기재되는데 그치나, ② 다른 시·읍·면으로 전적을 하는 경우에는 구분적지의 호적(전적 전 호적)은 제적되며, 신분적지에서의 호적(전적 후 호적)이 새로이 편제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쌍방 호적의 호적사항란에 호적 상호간의 색인적 연결기재가 이루어진다.

취적이란 일본인이면서도 호적이 없는 자(무본적자)가 가정재판소의 허가를 얻어, 취적신고를 함으로써 그 者에 대해서 새로이 호적이 편제되는 것을 말한다(호적법 제110조, 제111조). 일본에서 태어난 子로 부모가 불명인 자는 일본 국민이 되지만, 들어갈 부모의 호적이 없기 때문에 무본적자가 된다. 따라서 이 사람에게 대해서 호적이 편제되기 위해서는 상기의 취적절차에 의하게 된다. 다만, 기아발견신고(호적법 제57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에 의하게 되므로 제적된다.

5. 호적의 기능

가. 구체적 친족관계 증명 - 상속법에 미치는 영향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본의 호적은 가족카드방식에 의한 물리적 연결기재와 편제변환에서의 색인적 연결기재 등으로 인하여 호적에 등재된 각자에 대해서 호적기재만으로 그 직계, 방계 친족관계를 무한으로 또한 구체적으로 증명한다. 이는 호적에 등재된 자가 사망한 경우, 그 법정상속인 전원이 호적에 의해서 용이하게 증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전에 유언으로 상속자를 밝힐 필요가 없다. 일본에서는 유언상속이 지극히 희소하고, 오직 법정상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이 호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호적과 같은 신분등록제도가 없는 나라에서는 유언 없이 사람이 사망하면 그 상속인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제3자로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상속집행이 곤란해진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나라에서는 상속자를 밝히기 위해서 피상속인은 사전에 유언을 해 놓는 것이다.

호적과 상속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한지에 대해서는 1976년의 호적법 개정에서, 제적에 대한 공개가 일반적으로 제한되게 되었으나, 상속관계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라도 타인의 제적등본 등의 교부청구가 인정되었다는 사실로도 알 수가 있을 것이다(호적법 제12조의2).

나. 신분관계의 현상(現狀) 증명 - 친족법에 미치는 영향

(1) 중혼방지의 실효성

호적에는 호적에 등재된 자에 대해서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중요한 신분사항이 일괄·계속적으로 기입되기 때문에, 신분관계에 대한 현상을 파악할 수 있는 구조이다. 따라서 호적에 등재된 자가 현재 혼인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호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중혼에 대한 규제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일본에서 중혼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은 오직 호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혼인등록만은 존재한다고 하여도 이것이 일괄·계속적인 신분등록의 일환이 아닌 경우에는, 혼인등록을 한 자라도 그 사실을 숨기면 타인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그와 같은 나라에서는 혼인 거행에 있어서 중혼방지를 위하여

실지로 독신자라는 사실을 선서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밖에 없지만, 허위선서를 하면 중혼성립이 반드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2) 창설적 혼인신고제도

이와 같이 호적에 의해서 중혼방지가 실지로 가능하므로, 혼인신고 수리만으로 혼인의 법적 성립을 인정하는 창설적 신고제도도 가능한 것이며, 이것이 사회적으로도 시인되게 되었다.

호적과 같은 일괄·계속적인 신분등록이 없는 나라에서는 각자의 신분관계에 대한 현상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중혼을 방지할 방법이 충분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태에서 창설적 혼인신고제도가 선택되어, 단순히 서면에 의한 혼인신고가 제출되기만 하면, 혼인의 법적 성립이 쉽게 인정된다면 너무나도 불합리하며, 아마 사회가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나라에서는 혼인성립의 요건으로 교회 등에서의 결혼식 거행, 선서 등이 아무래도 필요해 지는 것이다.

(3) 출생아의 부자관계 증명

'혼인을 고하는 자가 父가 되며'라는 법언에서 말하듯이, 혼인관계의 존재가 부자관계의 전제가 된다. 호적에서는 등재된 자의 혼인관계 현상이 항상 명백하므로, 이것이 출생아의 부자관계를 나타내게 된다. 이는 즉, 실지로 妻(母)가 되는 者가 子를 출산한 경우, 그 子의 父는 그 夫(父)라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출생아가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지 그 여부는 제1차적으로 출생시의 부자관계 여하에 의하게 되므로(부계우선혈통주의, 국적법 제2조 제1호), 호적에 의해서 출생아의 부자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 그리고 이는 호적사무 그 자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출생아를 호적에 등재할지 여부는 일본 국적의 유무에 의하기 때문이다(국적과 호적과의 상관관계). 호적이 없는 미국에서는 혼인관계 현상을 제3자로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여자가 子를 출산한 경우, 그 여자(母)가 실지로 처(혼인 중인 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으며, 따라서 출생아의 父가 누구인지는 객관적으로 판명되지 않는다. 다만, 미국의 경우 국적법은 출생지주의이므로,

출생아의 국적은 출생장소 여하에 의하여 결정되며, 부자관계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일이 해결되는 면이 있다.

6. 호적공개 원칙

가. 1976년 이전의 상황

일본에서 신분관계의 공시라는 기능과 연결된 일본의 호적공개 원칙은 일찍이明治 31년(1898년)의 호적법에서 채택되어 1914년의 호적법 및 1947년의 호적법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당초 호적공개 원칙을 취하게 된 것은, 국민이 그의 사회생활 또는 경제생활상 호적에 의해 자기의 신분관계를 증명하고 혹은 거래행위나 기타의 면에 있어서 타인의 신분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이는 1890년의 호적법안에 관한 정부측의 설명이다.

1960년의 우리 나라 호적법 제12조의 전례가 된, 1947년 일본 호적법 제10조 제1항은 “누구라도 수수료를 납부하고 호적부의 열람 또는 호적의 등본 혹은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시·읍·면장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본항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로서 입법자가 상정한 바로는, 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② 함부로 많은 사람의 호적의 등·초본을 일시에 청구하는 경우, ③ 화재·수재 등의 재해로 인하여 관청이 그 집무를 행할 수 없는 경우 및 ④ 기타 이와 유사한 특수한 경우였다. 호적부나 제적부는 이를 일반에 공개해야 함은 그 성질상 당연하지만, 이를 무제한으로 허용할 때에는 호적사무취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함부로 청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단서를 두게 된 것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그 청구가 영리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목적을 수행한다는 이유로 호적등·초본의 교부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이처럼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호적사무관장자측의 사정, 특히 호적사무취급상의 지장 여부가 판단

기준이었으며, 그 점에서 1947년의 호적법은 사실상 무조건에 가깝게 호적의 공개를 허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947년 호적법의 상황에서는, 인권의식의 향상에 기하여 「개인의 명예유지」 등 호적공개제도를 이용하는 측의 사정도 “정당한 이유”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학설이 있었다. 이를 배경으로 하여 1974년 1월 14일에 한국의 읍에 상당하는 정에서 훈령을 만들어 호적열람과 등·초본의 교부 청구에 관하여 개인의 기본권 침해나 차별적 행위를 방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 훈령은 호적열람과 등·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본인 또는 그 친족을 원칙으로 하고, 그 이외의 자는 본인 등의 위임장, 동의서 혹은 승낙서의 제출 또는 제시를 요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훈령은 1947년의 호적공개 원칙을 규정한 호적법 제10조와의 관계에서 법원에서 다투어지게 되었고, 법원은 호적등·초본의 교부청구를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장 등의 첨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은 호적공개 원칙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그 후 학설은 무제한적 공개와 엄격한 제한 사이에서 절충을 도모하게 된다. 그리하여 통설은 호적법 제10조 제1항 상의 “정당한 이유”는 호적사무담당자측의 사정뿐만 아니라 호적이용자측의 사정도 아울러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와 같은 배경 아래 1976년 호적법의 개정이 있었고, 이는 현행법으로 적용되고 있다.

나. 1976년 이후의 상황 - 현행법

1976년 호적법은 호적부·제적부의 열람제도를 폐지하였다. 국민의 “프라이버시 보호”의 도모와 실무적으로 거의 이용이 없는 제도를 존치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폐지의 주된 이유였다. 열람 때에 호적원본이 손상되거나 혹은 이용자가 자구를 고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감독을 위하여 사람이 필요하며, 열람을 위한 설비에 늘 유의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많은 노고와 비용을 요하는 비효율성의 측면 및 오늘날 등·초본의 작성에는 복사기술의 고도한

발전으로 과거와 같이 호적등·초본의 교부를 위하여 일일이 수작업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지게 되어 당초보다 간편한 공개제도로서의 열람제도의 의의가 상실되었다는 점도 폐지의 근거가 되었다.

호적법상의 호적 열람제도는 폐지되었으나, 다른 법률에 의한 열람은 허용되며, 또 직무상 호적부 등의 열람을 필요로 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관공서 상호간의 협력관계에 기하여 열람의 청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1976년 호적법 개정의 핵심은, 타인이 호적(제적)에 등재된 자의 등·초본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법무성령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청구의 이유”(즉, “사용목적”)를 명확히 밝힐 것과, 그 청구가 “부당한 목적”에 의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시·읍·면장이 그 교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호적법 제10조 제2항, 제3항, 제11조의3 제2항).

이와 같은 개정의 목적은 역시 “국민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있었다. 그리고 타인이 호적에 등재된 자의 호적등·초본을 청구함에 있어 청구의 사유를 명확히 기재토록 한 것은, 시·읍·면장이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데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이다. 여기서 “부당한 목적”에 대하여 학설은, 타인이 호적내용을 아는 것에 대하여 법률상 혹은 사회 생활상 상당하다고 인정될 필요성 내지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호적에 기재된 자의 사적인 일(혼인외의 자, 이혼경력 등)을 흥미본위로 들여다보거나 이를 폭로하려는 등을 말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청구의 당부의 판단기준으로서의 “법률상 혹은 사회생활상 상당하다고 인정될 필요성”은 어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항상 명백한 것은 아니어서 시·읍·면의 청구에서 실제의 사무처리(즉, “부당한 목적”에 의한 청구인가의 여부에 대한 판단)는 사실상 대단히 곤란한 것으로 보인다.

학설은 호적등·초본 등 교부사무를 혼란에 빠트리지 않기 위해서 시·읍·면장의 심사가 어느 정도 형식적인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으며, 궁극적으로는 사회통념상의 객관적 기준에 비추어 청구의 목적 등의 사용목적의

정당성의 유무를 각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허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하나, 선례에 나타난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대금채권자로부터 “임금채권보전을 위해 소재불명의 채무자에 관하여 그 소재조사를 한다”는 청구사유에 의해 채무자의 호적등·초본 등의 청구가 있었던 경우에는 이를 거부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위 청구사유에 있는 채무자의 소재, 즉 주소나 거소는 호적의 기재 사항에 없기 때문에 호적의 기재사항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성은 인정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② 대금채권자로부터 “소재불명의 채무자의 친족으로부터 채무자의 소재를 캐물어서 알기 위해 친족의 씨명, 본적을 알 필요가 있다”는 청구사유에 의해 당해 채무자 또는 그 친족의 호적등·초본 등의 청구가 있었던 경우는 그것을 거부해야 한다고 하였다.

채무자의 친족은 채무자와 친족관계가 있는 것만으로 당해 채무 또는 채무자의 탐색에 관하여 법률상 어떠한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청구에 응하게 되면 친족의 사적 사회생활상의 평온을 해치고, 함부로 그의 프라이버시를 탐색하는 것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이는 부당한 목적이 될 것이어서 청구거부를 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③ 대금채권자로부터 “행방불명의 채무자 A에 대하여 실종선고의 신청을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청구사유에 의해 채무자의 호적 등·초본 등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거부해야 한다고 하였다.

부재자의 생사가 일정기간 불분명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가정법원에 대해 실종선고의 신청을 할 수 있으나(일본 민법 제30조), 채권자·채무자 기타 거래관계의 상대방은 위의 이해관계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새겨지고 있다. 따라서 위 사례에 있어서는 청구자가 청구의 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것이라고 여겨지고 부당한 목적에 의한 청구라고 판단되어 청구거부한 이유라고 이해되고 있다.

청구의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는, ① 호적에 등재된 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청구하는 때, ②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법무사 등 이른바 8 자격자가 직무상 청구하는 때(1985년 일본의 關西지방과 四國지방에서 호적등본의 부정수급·밀매사건이 있었는데, 이는 1976년에 호적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변호사, 법무사 등에 대해서는 직무상 호적등본 등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사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는 특례를 악용하여 변호사, 법무사 자격을 사칭하여 호적등본 등을 100통 이상 부정으로 교부받아 이것을 1통에 1만 엔에 밀매한 사건이다. 또한, 1988년에는 호적등·초본 등의 부정수령사건이 발각되었는데, 이는 1987년부터 1988년에 걸쳐 이른바 8 자격자의 일부가 인사신용조사업자와 공모하여 대량의 호적등·초본을 부정으로 수령한 사건이다), ③ 시·읍·면장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이다(호적법 제11조).

다음으로, 현행법상 제적부는 호적부에 비해 훨씬 까다로운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한하여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제적부는 예전에 편제·기재된 것이 많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보호의 필요성이 한층 더 크고(일본의 제적부에는 서자, 사생자의 기재 및 일본민족의 족칭, 화족·사족·평민의 기재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 호적부정도로 공개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① 제적부에 기재되어 있는 자,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②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 변호사 기타 법무성령에서 정하는 자는 그 등·초본 혹은 기재사항의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고(호적법 제12조의 2 제1항), ③ 기타의 자는 상속관계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타 법무성령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청구가 가능하다(호적법 제12조의2 제2항).

II. 중국

1. 역사 및 관계법령

가. 역사

중국에서는 당나라 시대부터 '호구제도'를 설치하고 있었다. 이 제도는 주로 인민에게 세나 부역을 부과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서, 부수적으로 사람의 신분관계를 기록하고 있었다. 즉, 과거 중국사회에서 호는 사법상 존재임과 동시에 공법상 존재였다. 공법상 존재로서 호는 국가가 사람을 장악하는 단위였다. 따라서, 호적이란 호를 공법적으로 주로 과세대상으로서 장악하기 위한 대장으로서 작성한 것이며, 사법상 가족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한 것은 아니었다. 이에 비하여 사법상 호는 사회적 현실로서만 존재하고, 공권 상으로 형식화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직전, 장기간의 전쟁 때문에 호적관리는 매우 혼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후, 새로운 호적법의 제정을 시도하여, 1951년 중앙인민정부 공안부는 건국 후 최초 호적법규인 '도시호구관리관행조례'를 공포했다.

이 조례는 공안지서가 도시의 호구등기를 취급하는 것으로 하여 도시의 호적관리제도를 기본적으로 통일했다. 그 뒤 1953년에 전국 제1회 국세조사의 인구등기를 거쳐, 1955년 국무원이 '상주호구등기제도 확립에 관한 지시'를 공포하여 전국에 통일된 호적등기제도가 성립했다. 그리고 그 뒤 1958에 중국의 호적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중화인민공화국호구등기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가 제1기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91회 회의에서 채용되고 공포되었다.

나. 호구등기조례

중국 호적법은 호구등기조례이다. '조례'는 호구등기취지, 호구기록을 관리

하는 행정기관, 호구부의 의의, 호구등기, 호구변동과 절차 등을 정한다.

호주등기조례에서 호구란 가구주(세대주)와 구성원의 총칭이다. 각 호에는 가구주가 있고, 구성원 1인을 일구라 한다. 가구주와 한 곳에서 공동으로 거주하는 자로 호를 형성한다. 주소를 기준으로 한 등록인 점에서 호적보다는 주민등록제도에 가깝다. 또한, 기업이나 대학 등이 생활공동체로 되고, 가족이 아닌 자가 공동생활로 하나의 '집단호'로 될 때가 있다. 예컨대, 대학의 학생기숙사 입실자가 하나의 '집체호'로 된다. 호적은 주민의 호구를 등록한 부책을 의미한다. 가구주는 호구등기신고책임자로서 본인과 함께 항상 등기할 자격을 갖는 자에 그친다. 시민은 통상 거주하는 지방에서 상주자로 호구 등기해야 하기 때문에 1개소에서만 상주자로 등기할 수 있다(조례 제6조).

이 '조례'의 제정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치안유지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사회주의건설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조례 제1조)는 제정목적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정부는 이 목적을 중시했으며, 실제에서도 호적제도의 기본기능으로 삼고 있다. 건국 후, 호적관리부문은 항상 사회치안 강화를 기본임무로 하고 있다. 입법취지에 관한 '조례' 제1조는 '사회질서를 유지한다'고 하는 목적을 가장 우선하고 있다. 따라서, 호구등기기관은 호구등기를 할 때, 가령 반혁명자와 그 밖의 범죄자를 발견했을 때는 사법기관에 보고하여 법에 따른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조례 제21조).

가석방·형집행유예 선고받은 범인, 관제(管制) 받은 자와 그 밖의 법에 따라 정치권이 박탈된 자가 이사할 때는 호구등기관을 통하여 현·시가 관할하는 구인민법원이나 공안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지 않으면 전출등기를 할 수 없다. 전입지에 도착한 후 바로 호구등기기관에 전입등기를 신고해야 한다(조례 제14조). 이와 같이 호적을 통하여 치안을 관리한다.

(2) 도시인구 제한

호구이전을 제한하는 것은 현행 특수한 호적관리제도의 기능이다.

시민이 상주지 시·현 구역 밖의 도시에 3일 이상 기류 할 때는 기류지의 호주나 본인이 3일 안에 호구등기기관에 기류등기를 신고하고, 그 곳을 떠나기 전에 신고하여 이것을 말소한다. 여관에서 기류 할 때는 여관이 여객등기부를 설치하여 수시로 등기한다(조례 제15조 제1항). 시민이 농촌에서 도시로 이사할 때는, 도시노동부문 채용증명서, 학교입학증명서나 도시호구등기관의 전입허가증명서를 제시하여, 상주지 호구등기기관에 신청하여 전출절차를 밟아야 한다(조례 제10조 제2항).

1950년대부터 국무원, 공안부, 지방정책, 지방공안부문은 기본적으로 집현을 포함하는 도시인구의 증가를 제한하는 방침을 택하고 있다. 호구의 이전제한에 따라 도시인구의 증가를 제한하는 것은 계획경제모형을 실행하는데 대응한 것이다.

1949년의 전국 제1기 정치협상회의에서 채택된 '공동강령'과 1959년 9월의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전국 제1기 인민대표대회 제1회 회의 채택) 제90조 제1항은 시민은 이주자유를 가진다고 정했지만, 1975년에 채택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과 그 후 개정에는 이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규정은 사라졌다. 이것은 현행 호적제도의 특징이 헌법에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호적제도로 인구가 도시로 집중하는 것을 제한하려고 해도, 실제 그 유입을 막을 힘은 충분하지 않다.

(3) 신분증명

호적관리는 정부가 사회를 제어하기 위한 기초이다. 혼인관리기관은 문서보존·관리규정에 따라 혼인등기문서를 적절히 보관하고, 혼인등기기관은 혼인등기문서를 바탕으로 「혼인증」이나 「이혼증」을 분실한 당사자에게 「부부관계증명서」나 「부부관계해소증명서」를 발행 할 수 있다. 위 2종류 증명서는 「혼인증」이나 「이혼증」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진다(혼인등기법 제10조 제1항, 제2항). 호구등기부와 호구부에 등기한 사항은 시민의 신분을 증명하는 효력을 가진다(조례 제4조 제4항)에서 보듯이 호구등기는 시민 신분을 증명하는 법적 효력이 있으며, 시민의 사회활동의 바탕이다. 국가는

호구등기를 통하여 시민의 신분을 증명하고,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행사, 정당한 거주와 이전, 노동취업, 교육, 양식과 의류의 구매 등, 시민의 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신분증명은 출생, 사망, 주소전출과 전입, 4가지 사항이다.

다. 관장기관

신중국 성립 이후, 호적관리는 일관하여 공안기관이 주관한다. 국가공안부, 성(직할시, 자치구)공안청(국), 현(구)공안국(분국), 향·진(읍)공안지서의 4급 호적관리체제를 둔다. 공안 국내의 호적처(과)와 공안지서의 호적계는 호구등기부와 출생, 사망, 전출, 전입의 4종의 등기장부를 마련하고, 호구등기부에 향진의 상주자 전부를 등기하고 인구변동과 치안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무를 담당한다. 1954년 12월 제1기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4회 회의에서 채택하여 공포한 공안지서조직조례 중에 공안지서의 직권을 규정하고 있는데(조례 제2조), 그 하나로서 '호구관리'를 명시한다. 공안지서는 호구등기기관이다.

2. 호구부

가. 편제

호구등기기관은 호구등기부를 설치한다. 본인을 포함하여, 개인은 호구등기부를 열람할 수 없다. 이 호구등기부의 기록내용 중 1책에 전기하여, 각 호에 비치한 것이 호구부다. 도시, 수상(水上) 및 공안지서가 있는 진에서는 1호마다 호구부 1책을 발급한다. 농촌에서는 호구부를 각 협동조합에 비치하고, 각 호에게는 발급하지 않는다.

혼인, 이혼, 입양, 인지, 실종, 실종자의 귀택, 가구(세대)분리, 가구(세대)합병, 그 밖의 사유에 따라 호구변동이 생긴 때는, 호주나 본인이 호구등기기관에 변경을 신고한다(조례 제19조). 하나의 호구부에 있던 자 중 일부가 호

구를 이전했을 때는 전호구부에 전출일과 전출처를 기록하며, 전입처의 호구부에 그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다. 그 전원이 호구이전했을 때는 전호구부를 폐쇄하고 새호구부를 편제한다.

일반적으로 함께 살고 있는 가족 전원을 호구부 1책에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호구부는 주민등록이기도 하다. 그러나 전거하더라도 호구부에 반영하지 않을 때가 많으므로, 완전한 주민등록으로서 현실을 반영한 것은 아니다.

호마다 비치하고 있는 호구부 외에 공안지서에 보관하고 있는 호구등기부와 출생·사망·전출·전입의 등기장부가 있으며, 또한 형사벌을 받은 적이 있는 자 등 각종의 요주의자에 관한 서류 등이 있다. 이러한 호구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안국 이외는 본인을 포함하여 개인은 열람할 수 없다. 공안국 내부에서도 소개장과 지서소장이 허가해야 열람할 수 있다.

나. 기록내용

호구부에는 가구(세대)주와 친족, 성명, 차명(빌려서 사용하는 성명), 성별, 생년월일, 출생지, 연령, 직관(조부이전 조상의 거주지), 민족, 종교, 학력, 혼인상황, 직업, 근무처, 호구이전과 호구등기사항에 관한 변경·정정을 기록한다. 변경등기는 당사자의 신고에 따른다(특히 학력, 직업, 근무처 등은 변경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기재가 고쳐지지 않아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혼인상황은 혼인등기하기까지 기록하지 않든가 또는 '미혼'이라 기록한다. 기혼자의 경우 '기혼'에 표시하거나 배우자의 성명을 기록하고, 자녀의 성명은 기록하지 않는다. 직업은 간부, 노동자, 교사, 군인, 농민, 도시주민 등으로 구별한다.

호구부의 1항목은 가구(세대)주에 관한 것이며, 다음 항목부터는 호의 구성원에 관한 것이다. 호의 구성원에는 배우자, 자녀뿐 아니라, 친족은 물론 사용자 등 친족관계가 없는 자도 포함한다.

호구부는 가구(세대)주와 그 가족별로 항을 나누고 있지만, 가족관계를 나타내는 항목은 가구(세대)주와 관계 1란 밖에 두고 있지 않다. 각 사람의 부모

성명을 기록하는 항목은 없다. 또한, 호구부에 기록하는 가족범위를 제한하지 않는다. 당연히, 3, 4대 이상이 동적하는 호구도 있을 수 있다. 가구(세대)분리에 따라 호구를 변경할 수 있지만, 동거한다. 가족전원이 호구부 1책일 때도 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사실상 동거와 동적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동거하고 있어도 자녀와 부모가 다른 호구부인 일도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가구(세대)주와 관계에서 손자, 조카 등, 친족관계에 있는 자는 그 친족관계를 기록한 것만으로 그 자의 부모나 자녀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 또한, 養子나 혼외자녀라는 사실을 명기하도록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嫡子와 동일하게 일반적으로 딸이나 아들로써 기재할 수가 있으며, 친자관계에 대한 표시도 없다. 가족관계, 특히 친자관계는 호구부로는 충분히 증명할 수 없다.

다. 출생

출생은 1개월 이내에 가구주, 친족, 부양자 등이 자녀의 상주지 호구등기기관에 신고하고, 기아는 양육자나 육아기관에서 출생신고한다(조례 제7조). 영아가 출생 후 출생등기 신고 전에 사망했을 때는 출생·사망 두 가지 등기를 동시에 신고해야 한다(조례 제9조).

입양은 '입양법'에 따라 민정부문에 등기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친부모불명인 유기한 자녀와 육아기관에 있는 고아를 양자로 할 때만 등기한다. 그 밖에, 양부모와 양자를 데려온 자와 사이에 입양관계를 서면상 협의로만 하며, 당사자가 그 공증증명을 바랄 때는 사법부의 공증기관에 입양공증증명을 청구해야 한다.

입양, 인지에 따라 호구를 이전했을 때는 가구주나 본인은 호구등기기관에 변경등기를 신고해야 한다(조례 제19조). 입양, 인지는 호구이전사유이지만, 반드시 호구를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동 생활지나 출생지와 관계없이 모친의 호구 소재지에서 출생등기를 하여야 하지만, 계획출산정책이 실시되고 나서는 호적의 출생등기도 계획출산관리에 이용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정책들 앞에서 확실한 출생등기를 확보한다는 일은 후퇴하기 쉽다. 호적이 없는 "어둠의 자식"문제는 그 불완전함의 하나의 예이다. 계획 외 출산에 대한 제재로서 그 자녀의 호구등기를 허가하지 않는 지구가 적지 않다. 또한, 계획출산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호구등기를 신고하지 않는 자도 있다. 따라서 호적이 없는 혼외자녀도 적지 않다.

중국법에서는 친생자를 포함한 모든 자녀는 모친의 호구부에 출생등기한다고 정하여, 호구의 모계승계제를 택하고 있다. 자녀는 공동 생활지나 출생지와 관계없이 원칙으로 그 모(母)의 호구소재지로 출생등기한다.

라. 혼인과 이혼

혼인과 이혼은 혼인등기기관에 등기함으로써 그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혼인등기와 이혼등기는 공안부의 호적관리기관이 아닌 민정부의 혼인등기기관에서 담당한다. 즉, 혼인등기를 다루는 기관은 농촌에서는 향·민족향·진의 인민정부이다(혼인등기변법 제3조).

중국에서는 동거부부라도 동적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혼인, 이혼은 호구이전사유지만, 반드시 호구이전을 수반하지 않는다. 만약, 혼인이나 이혼에 따라 호구이전이 생겼을 때는 가구주나 본인이 호구등기기관에 그 변경을 신고할 수 있다(조례 제19조).

(1) 혼인

혼인당사자는 혼인등기기관에 출석하여 혼인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 할 때는 본인의 주민신분증이나 호적증명, 본인의 생년월일과 혼인상황(미혼, 이혼, 사별)을 기록한 소속조직이나 촌민위원회가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이혼자는 이혼증도 제시해야 한다(혼인등기변법 제4조). 등기기관은 혼인성립요건에 관한 행정적인 판단에 따라 심사하여 등기하고 '혼인증'을 발급한다(혼인등기변법 제5조). 그러나 혼인등기변법 제6조에 혼인신청하는 남녀 양쪽 모두나 그 한쪽이 ① 법정혼인연령에 이르지 않았을 때, ② 자유의

사를 바탕으로 하지 않았을 때, ③ 이미 배우자가 있을 때, ④ 직계혈족이나 3대 이내(사촌 이내) 방계혈족일 때, ⑤ 판센씨병이나 성병에 걸려 치료하지 않았을 때에 해당할 때는 혼인을 금지하고 등기하지 않는다. 혼인증을 발급 받은 당사자는 이 혼인증을 받아, 그것을 각자의 호구소재지의 공안지서에 호구부의 '혼인상황' 항목이 미혼에서 기혼으로 변경되었음을 신고한다. 이 때는 통상 각 호구부의 본인의 1항에 있는 '혼인상황' 항목에 배우자의 성명을 기록하거나 '기혼'으로 표시한다.

혼인등기를 바탕으로, 혼인등기기관은 '혼인증'을 분실한 당사자에게 '부부관계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다. 이 증명서는 '혼인증'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진다(혼인등기변법 제10조). 혼인증이나 부부관계증명서 양식은 민정부가 통일하여 제정한다. 혼인증, 부부관계증명서에는 남녀쌍방의 사진을 붙이고, 혼인등기편인을 찍어야 한다(혼인등기변법 제11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부부 애정을 바탕으로 공동생활하며, 자녀양육은 일반적으로 부부동거를 전제하지만, 중국 혼인법에서는 이를 법적인 규범으로 정하지 않는다. 이는, 특히 아내가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종속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을 반대한 것이라 한다. 1980년 혼인법 제8조는 '혼인등기 후 부부 쌍방의 합의에 따라 아내는 남편가정의 일원으로 될 수 있고, 남편도 아내가정의 일원으로 될 수 있다'고 정할 뿐이다. 가정의 일원으로 되는 것은 호구변경을 뜻하지 않는다. 이는 가정의 일원으로 적합한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지는 것, 즉 호구를 상대의 소재지로 옮기지 않더라도 노인부양 의무를 지고, 또한 유산상속권을 갖는다는 것을 뜻한다.

(2) 이혼

부부 모두 이혼을 바라고, 또한 자녀부양과 재산처분문제를 협의했을 때는, 당사자는 일방의 호구소재지 혼인등기기관에 이혼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혼인등기기관은 상황을 조사한 뒤 사실임을 확인했을 때는 이를 등기하고, '이혼증'을 발급하고 '혼인증'을 회수한다. 이혼은 부부 중 일방이 청구하거나, 쌍방이 청구하지만 자녀부양이나 재산처분협의를 하지 않았을 때는, 혼

인등기기관에 이혼을 등기할 수 없다(혼인등기변법 제7조).

혼인등기기관은 이혼증을 분실한 당사자에게는 '부부관계해소증명서'를 발행한다. 이 '부부관계해소증명서'는 '이혼증'과 같은 법적 증명력을 가진다. 또한 '이혼증'이나 '부부관계해소증명서' 양식은 민정부가 통일적으로 정한다. 그리고 이혼 후 남녀 양쪽이 자유의사에 따라 부부관계의 회복을 바랄 때는, 양 당사자가 스스로 한쪽 호구소재지의 혼인등기기관에 복혼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혼인등기기관은 혼인절차에 따라 등기하고 「혼인증」을 발급하고 이혼증을 회수한다(혼인등기변법 제8조).

마. 사망

사람이 사망했을 때는, 도시에서는 매장하기 전에, 농촌에서는 1개월 이내에 가구주, 친족, 부양자나 가까운 자가 호구등기기관에 사망을 신고해야 한다. 사람이 거주지에서 사망했을 때는, 거주지 호구등기기관이 상주지의 호구등기기관에 통지한다. 신고받은 호구등기기관은 그 호구를 말소해야 한다(조례 제8조 제1항).

사람이 우발적 사고로 사망하거나, 사망원인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가구주나 발견자가 바로 그 지방 공안지서나 향·진 인민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조례 제8조 제2항).

3. 특징

중국본토가 모택동의 공산화혁명으로 공산화된 이후의 중국의 신분등록제도는 중앙정부의 의하여 계획경제가 실시되는 사회주의 체제와 중국대륙의 광활함, 인구수의 과다 등의 사회적 여건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중국의 신분등록제도의 목적은 사회질서의 유지, 정부의 인구억제정책, 인구이동의 제한 등으로, 신분법상의 신분을 등록·공시하는 목적은 중국의 신분등록제도의 단지 부차적인 목적에 불과하다.

중국의 신분등록제도의 편제방식은 우리 나라, 일본, 대만 등의 동양국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가를 단위로 한 편제방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호구를 신분등록제도 편제의 기본단위로 하고 있다. 이러한 호구(戶口)는 우리 나라, 일본, 대만의 민법상의 친족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는 가(家)와는 많은 차이가 있으며, 신분등록제도의 편제는 군인, 학생, 집단농장의 농부 등 거주를 같이 하는 직업별 편제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중국의 신분등록제도에 있어서 민법상의 신분을 등록·공시하는 기능은 단지 부차적인 것이다. 또한, 중국의 신분등록사무의 관장과 호적부의 보관 업무는 공안파출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공안파출소는 중국의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공안기관이다.

중국의 신분등록제도는 우리 나라와 일본과 같이 호적법과 주민등록제도로 이원화되어 있지 않고, 호적제도와 주민등록제도의 목적을 하나의 제도로 시행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정부의 시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중국의 신분등록제도의 편제단위가 되는 호구가 도시로의 인구이동의 제한, 인구억제정책 등의 영향으로 하나의 계급화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 특징은 호구의 고정성, 등급성, 가치성, 계급성이 그것이다.

중국에서 시민은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지방에 상주자로서 호구등기를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1개소에 대해서만 상주자로서 등기를 할 수가 있다. 호구등기는 즉, 주민등록이다. 각자는 원칙적으로 현주소가 이동되면 호구를 이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의 이전희망지에 대한 전입, 특히 농촌에서 도시로의 전입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거주이전 제한정책하에서는 호구이전을 할 수 있는 여유분이 없다면 호구이전 사유가 있더라도 호구이전은 불가능하다. 이와 같이 전거를 하여도 호구부에 반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민등록으로서도 완전히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는 않다. 그 결과 호적상 인구이동이 지체되어 호구의 고정성이 발생된다.

또한, 중국의 호구는 일상생활과 관련되어 있다. 지역격차를 반영하여 호구가 종류에 따라 나누어지게 되었으며, 그 중에서는 도시와 농촌이라는 이원

적 사회구조에 의한 농업호구와 비농업호구 등 2가지로 분류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구별이다. 농업호구를 가진 자와 비농업호구를 가진 자로 분류하는 일은 직업과 계층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일종의 신분등급을 의미한다. 호구는 그 등급성으로 인하여 현실생활에서는 상품화의 경향을 띤다. 즉, 호구는 가치성을 지니며, 구체적 가격으로 나타나는 일이 있다. 등급이 서로 다른 호구사이에서 혼인이 성립되었을 경우, 일방의 호구가 다른 일방의 호구로 전입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출생등기에 있어서 적자를 포함 모든 자녀는 모친의 호구부에 출생등기가 이루어지는, 소위 호구의 모계승계제가 채택되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의 호적제도는, 어떤 지방 또는 도시에 주민등록이 이루어지는가에 의해 달라지는 일종의 신분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친자관계를 나타내는 신분등록기능은 종적이며 불완전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III. 대만

1. 역사

대만(중국)의 신분등록제도는 이미 고대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중국의 호적은 우리 나라 고대의 호적과 같이 가장(家長)을 중심으로 한 호적편제방식에 의하여 호적을 편제하였으며, 호적의 주요한 목적은 조세징수의 기초자료로서의 성격이 매우 강하였다.

특히 대만(중국)의 고대 호적에서 특기 할 만한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즉 당대(唐代)의 호적에는 가장 및 가족과의 관계, 성명, 신분, 성(姓), 연령을 기재하였으며, 연령의 기재에 있어 연령의 많고 적음의 따라 老, 정, 중, 소로 구별하여 기재하였으며, 건강에 대하여도 기록하였다. 즉 3단계로 건강의 상태를 기록하였다는 점이 중국 당대(唐代)의 호적에 있어서 특기할 만한 사항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나라의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신분등록제도와 거의 동일하다.

2. 편제방식

가. 개정전 호적편제방식

1930년에 공포·시행된 호적법에 의하면, 호적등록부와 인사등록부의 2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호적법 제1조), 이 호적의 편제는 一家를 一戶로 하는, 가를 중심으로 한 호적편제방식을 취하고 있다. 한가지 특기할 만한 것은 家를 중심으로 한 호적편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주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자는 개별적인 호적을 편제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호적의 편제에 있어서 家를 중심으로 편제하더라도 실질적인 생활공동체로서의 家를 더욱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다.

호적등기부는 본적등기부와 가적등기부의 2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적등기부는 개인을 중심으로 편제한 것이며, 가적등기부는 가를 중심으로 한 편제를 의미하고 있다. 이 각각은 정본과 부분 2통을 작성하여 비치하도록 되어있다(호적법 제16조).

인사등기부(人事登記簿)는 출생, 인지, 수양(收養), 결혼, 이혼, 감호(監護), 사망, 사망선고, 상속 등을 기재한다(호적법 제24조). 그리고 호적 및 인사등기는 현(縣)의 향진구역(鄉鎮區域), 시(市)의 방구역(房區域)을 그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으며(호적법 제3조), 그 감독은 향진, 방이 소재하는 시·현의 정부가 직접 감독한다(호적법 제23조).

나. 개정후 호적편제방식

이러한 호적법은 민국23년, 35년, 43년에 각각 개정되어 적별등기(籍別登記), 신분등기(身分登記), 천도등기(遷都登記) 3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것은 각기 우리나라의 호적제도, 주민등록제도 등에 각각 해당되는 제도이다. 재산의 등기에 사용되는 용어를 그대로 신분의 변동에도 사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신분사회에서 비신분사회로 넘어가면서 재산의 등록은 중요하게 여기면서 민법상의 신분의 등록·공시는 덜 중요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는데 비하여, 이를 재산의 등록과 같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상을 엿 볼 수 있으며, 이는 동양적인 신분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상에서 연유했다고 볼 수 있다.

다. 특징

대만의 신분등록제도의 특이할 만한 사항은 중국의 본토가 공산화되어 대만으로 이전하면서 신분등록제도가 각기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여 왔다는 것이다.

앞에서 본 천도등기(遷都登記)라는 제도는 우리 나라와 같이 주민의 동적 이동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일종의 주민등록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